



2015
Shinhan Card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신한카드 주식회사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위 성 호

위 성 호.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Shinhan Card



Contents

1. 지배구조 일반	6
2. 이사회	11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3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57
5.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67
6. 감사위원회	74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90
8. 리스크관리위원회	103
9.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112
10. 주주총회	127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30
12. 첨부[관련규정,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후보 검토보고서]	132



01

지배구조 일반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Shinhan Card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당사 또는 회사']는 건전한 경영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다양성/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그 원칙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회사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당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 확인 웹페이지 : www.shinhancard.com(신한카드), www.crefia.or.kr(여신금융협회)]

두번째로,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서 이사회와 관련하여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지배구조내부규범/이사회규정 등을 정비하여 모범규준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그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에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사회에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15년말 기준 이사 총수 57% 사외이사로 구성).

또한, 모든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운영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특정 직업군이나 소수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5년말 기준 금융분야 3명, 경영분야 2명, 법률분야 1명, 재무/회계분야 1명)

1. 지배구조 일반

또한, 주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부자문기관 등 다양한 경로의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중 1명을 사내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본인추천을 금지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Clubby Boards)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15년말 기준)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회사 창립의 근간인 재일동포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자가 당사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견제기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1. 지배구조 일반

이사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로 구성된 총 4개의 이사회내위원회가 있으며, 모든 위원회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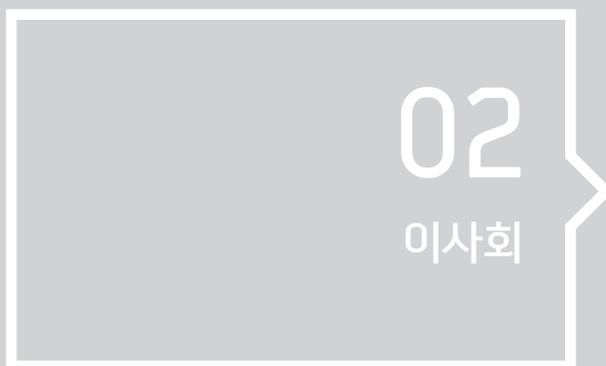
[3] 지배구조 현황('15년말 기준)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의장/ 위원장	관련 규정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전략/목표 수립 • 정관 등 중요규정 제/개정 • 예산 및 결산 승인 • 지배구조 정책,원칙 수립 •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등 	7명 [사외이사 4명]	위성호 [사내이사]	-정관, -이사회규정, -지배구조내부 규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선임 원칙 수립/점검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검증 등 	3명 [사외이사 2명]	위성호 [사내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감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계획의 수립/집행/사후조치 •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의 선임/평가 등 	3명 [사외이사 2명]	김동환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규정
리스크관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변경 •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개정 등 	3명 [사외이사 2명]	김경림 [사외이사]	- 리스크관리 위원회규정
보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 평가 및 보상안 확정 • 성과보상체계 결정 등 	3명 [사외이사 2명]	박평조 [사외이사]	- 보상위원회 규정

1. 지배구조 일반

다. 관련 규정

- 첨부 1. 정관
- 첨부 2.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 3. 이사회 규정
- 첨부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 5.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 6.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 첨부 7. 보상위원회 규정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Shinhan Card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는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및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내부규범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동일내용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5. 12월 11일에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2016년 경영계획(안) 및 2018년 중기전략(안)'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2018년 중기전략은 2015. 2월 주무부서인 전략기획팀 중심으로 구성한 실무 TFT를 시작으로 2015년 8월에 개최된 임원 워크샵에서 '2018년 중기전략'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6년 경영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2015. 11. 12일에 개최된 이사회워크샵에서 2018년 중기전략과 2016년도 경영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2015. 12. 11일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2016년 경영계획 및 2018년 중기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중기전략은 급변하는 카드산업 환경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을 혁신하다' 라는 의미의 'Finnovate to 2018'로 설정하였으며, 2016년은 중기전략 실행의 원년으로써 환경변화 트렌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 유연성과 스피디한 실행력을 갖추고자 속도경영을 의미하는 '비상 V2'를 전략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 이사회

이를 위해, 모바일 트렌드 주도권 공고화, 신규사업 모델 다각화, 글로벌 비즈니스 본격 전개, 회원 펀더멘탈 강화, 전략적 비용절감 성과 확대, '신한Way' 기반 강한 조직문화 확립으로 구성된 6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예산 및 결산승인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2015. 12월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임직원 보수(인건비) 약 5,081억원을 포함한 판관비 예산 26,876억원 및 투자 예산 8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판관비 예산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나, 비용생산성 제고 및 전략적 비용절감 강화로 외형성장(개인결제 취급액 +3.4%) 대비 낮은 증가계획을 수립하였고, 투자예산은 핀테크/모바일, Big Data, 글로벌 등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 결산안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15. 1월 초안을 마련하여 2015. 2월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감사위원회를 거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2015. 2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당기순이익 : 6,352억원 (연결기준 6,352억원)
- 총자산 : 222,174억원 (연결기준 222,595억원)
- 배당 : 5,501억원 (배당後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 27.1%, ROE 11.3%)

[다]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동일내용을 이사회에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조직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 12월 개최된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 2016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사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조직은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즉시 해결(On demand) 할 수 있는 빠른 실행력을 갖춘 조직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2. 이사회

[라] 지배구조 원칙 · 정책의 수립 · 평가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사목에서 동일내용을 이사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모범규준의 취지를 반영하여 '15. 2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새롭게 제정하고, 정관, 이사회규정 등 관련 규정을 그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당사가 최적의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사회로 권한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할 계획입니다.

[마]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사목에서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이사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또는 이사의 경업승인에 대해서는 이사회로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특히 당사의 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계열사 등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가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로 권한과 역할을 지속 보완/강화할 계획입니다.

[바] 내부통제기준 수립 · 평가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는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내부통제 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이사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법령준수/건전경영/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수립/변경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의 실제 작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감사위원회가 최종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15. 2월 개최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14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평가결과를 감사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2. 이사회

평가,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평가 등 총 196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종평가는 적정(양호)한 것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사]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내부규범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회사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항'을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13조 제1항 제6호에서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년 전사 총리스크한도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심의/의결하고, 해당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한도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15. 12월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16년 리스크한도 설정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리스크한도를 27,600억원으로 설정하였고, 유형별 리스크한도는 총리스크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리스크 24,500억원, 금리리스크 2,200억원, 운영리스크 2,800억원, 시장리스크 4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였음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아] 경영승계업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이사 승계계획 등을 포함하여 그룹 전체의 경영승계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경영승계와 관련한 계획의 수립/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당사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 이사회 의 총원수는 3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됩니다.[정관 제25조, 이사회규정 제6조]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의 최소 이사회 총원(상법 제383조 제1항)을 반영한 것이며, 최대 9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이사의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의사결정 지

2. 이사회

연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정관 제25조, 이사회규정 제6조]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2장제1 절제5조의 이사회의 구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5년말 당사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사로 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년말 시행된 금융회사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이내로 하고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도록 당사 정관을 201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변경 [정관 제 26조]하였습니다. 이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015.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및 상근감사를 제외한 5명의 이사가 임기 만료되었으며, 사외이사 1명, 이 중 4명은 연임되었고 새롭게 1명의 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15.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1명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5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7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여전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제19조의8)에서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동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나 최근 2년 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해당 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해당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해당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거나 해당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아울러,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3조에서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7조[이사회 의장]에서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카드업이 일반 금융업에 비해 제반 환경 및 영위하는 업무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매우 다양한 영역의 안건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함에 따라 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카드업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상근직으로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 본질적인 기능을 담보하고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이사회 의 독립성 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1인(김경림 사외이사)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된 사외이사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임사외이사를 별도 선임한 사유는,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 시 최우선으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또는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며, 사외이사회의 운영을 통해 이사회 의 독립성과 회사에 대한 견제수준을 제고 시키고자 함입니다.

[2] 구성원

① 이사회 의장 위성호(대표이사)

위성호 대표이사는 2013년 임시주주총회일(2013. 8. 23)에 선임되었으며, 최초 임기는 2년이었으나, 2015년 임시주주총회일(2015. 8. 21)에 연임되어 임기는 2016. 8. 26일까지입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3. 8월	현재	신한카드 사장
2013. 5월	2013. 8월	신한카드 부사장
2011. 4월	2013. 5월	신한은행 부행장
2008. 8월	2011. 4월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07. 8월	2008. 8월	신한금융지주 경영관리담당 상무

2. 이사회

2007. 5월	2007. 8월	신한금융지주 경영관리팀장
2006. 4월	2007. 5월	신한금융지주 HR팀장
2004.12월	2006. 4월	신한금융지주 통합기획팀장
2004. 1월	2004.12월	신한은행 PB사업부장
2002. 8월	2004. 1월	신한은행 강남 PB센터장
1985. 2월		신한은행 입행

위성호 대표이사는 상임이사로서 회사 총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으로는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2015년 정기주주총회부터 금융회사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사외이사 중 1명을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㉔ 이사 김성화(상근감사위원)

김성화 이사는 2014년 정기주주총회일(2014. 3. 31)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現 임기는 2015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2016. 3. 23)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2. 3월	2014. 3월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
2007. 8월	2008. 6월	신용감독국장
2006. 4월	2007. 8월	은행감독국장
2005. 7월	2006. 4월	기획조정국 국장조사역
2004. 6월	2005. 6월	런던정경대 재무회계학 객원연구원
2003. 4월	2004. 4월	국제업무국 국장
2002. 1월	2003. 4월	감독정보실 실장
2001. 5월	2002. 1월	은행검사2국 팀장
1999. 1월	2001. 5월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수석전문역
1998. 4월	1998. 12월	은행감독원 기획조정실 과장
1996. 9월	1998. 4월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과 과장
1978. 1월	1996. 9월	한국은행

2. 이사회

김성화 이사는 당사의 감사 전반을 담당하는 상근감사위원으로서 2014. 3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③ 선임사외이사 김경림[사외이사]

김경림 이사는 2011년 정기주주총회일(2011. 3. 22)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現 임기는 2015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2016. 3. 23)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4. 1월	2015. 3월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 고문
2008. 9월	2013. 12월	법무법인 지평 지성 고문
2007. 5월	2010. 5월	삼성증권 이사회 의장
2004. 5월	2010. 5월	삼성증권 사외이사
2004. 4월	2008. 9월	법무법인 지성 상임고문
2002. 4월	2003. 4월	한국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2000. 5월	2002. 3월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1999. 3월	2000. 5월	부산은행 은행장
1997. 3월	1998. 12월	은행감독원 부원장보
1995. 7월	1997. 3월	한국은행 이사
1994. 4월	1995. 7월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장
1991. 4월	1994. 4월	은행감독원 여신관리국장
1990. 3월	1991. 4월	은행감독원 금융개선국장
1988. 9월	1989. 3월	은행감독원 임원실장
1983. 12월	1986. 7월	한국은행 자금부 차장
1979. 5월	1980. 4월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과장
1976. 8월	1979. 5월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조사역
1966. 2월		한국은행 입행

김경림 이사는 2015. 3월부터 사외이사를 대표해 선임사외이사로서 활동 중이며, 이사회내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에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④ 이사 김동환[사외이사]

김동환 이사는 2013년 정기주주총회일(2013. 3. 27)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現 임기는 2015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2016. 3. 23)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1997. 4월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8. 11월	현재	은행법학회 부회장
2011. 7월	2012. 6월	금융학회 부회장
2010. 5월	2011. 4월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 실장
2009. 2월	2011. 2월	금융감독원 재제심의위원회 위원
2008. 10월	2009. 10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 위원
2007. 3월	2009. 3월	감사원 금융/재정분과 자문위원
2007. 3월	2010. 3월	전북은행 사외이사
2005. 7월	2007. 7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분과위 자문위원
2002. 4월	2004. 3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1998. 4월	2006. 3월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 전문위원
1990. 4월	1997. 3월	일본 문부성 국비연구원
1986. 7월	1990. 3월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김동환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15. 3월부터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⑤ 이사 박평조[사외이사]

박평조 이사는 2014년 정기주주총회일(2014. 3. 31)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5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2016. 3. 23)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09. 7월	현재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고문
2006. 3월	현재	일본 미마치기업 주식회사 사장
1997. 6월	현재	재일 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직선 중앙위원

2. 이사회

1988. 5월	현재	사회복지법인 미마츠선린회 이사장
2003. 3월	2004. 3월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2002. 4월	2004. 3월	삿포로 쓰쓰기노 비루진구협회 부회장
1999. 4월	2005. 4월	재일 대한국민단 북해도지방본부 단장
1997. 8월	1999. 3월	신용조합 북해상은 이사장
1996. 4월	1999. 3월	재일 대한국민단 북해도 지방본부 의장
1993. 4월	1996. 3월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정책기획담당)
1992. 3월	2005. 3월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1990. 12월	1994. 5월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1988. 5월	2006. 3월	주식회사 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
1986. 4월	1992. 3월	북해도 한국 청년상공회 회장

박평조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15. 3월 새롭게 신설된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⑥ 이사 성재호(사외이사)

성재호 이사는 2015년 정기주주총회일(2015. 3. 26)에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5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2016. 3. 23)에 만료됩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6. 1월	현재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회장
2015. 1월	2015. 12월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014. 1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자문위원
2014. 1월	현재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문위원
2012. 1월	현재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
2011. 2월	2013. 1월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 처장
2009. 3월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 1월	2010. 12월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2009. 1월	2009. 12월	국제법 평론회 회장
2009. 1월	2010. 12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 이사회

2008. 1월	2009. 12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2007. 1월	2008. 12월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2007. 1월	2009. 1월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처장
2005. 2월	2007. 1월	성균관대학교 학생처 처장
2005. 1월	현재	NIS 국제범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2. 10월	2009. 2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교수
1994. 3월	2002. 9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1993. 8월	1994. 2월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조교수

성재호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2015. 3월부터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⑦ 이사 임보혁(기타비상무이사)

임보혁 이사는 201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일(2015. 8. 28)에 소재광 이사 후임으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2016. 2. 3일 퇴임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부사장인 임보혁 이사는 모범규준 시행에 앞서 당사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 차원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주요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4. 1월	현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11. 7월	2013. 12월	신한금융지주 리스크담당 상무
2008. 9월	2011. 7월	신한은행 전략지원부 부장
2006. 3월	2008. 9월	신한은행 학동지점장
2002. 8월	2006. 3월	신한은행 리스크관리팀 팀장
2001. 4월	2002. 8월	신한은행 리스크관리팀 차장
1999. 12월	2001. 4월	신한은행 종합기획부 차장
1987. 9월		신한은행 입행

임보혁 이사는 기존 소재광 이사('15. 8월 임기만료)의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자격을 동일하게 승계받아 2015. 8월부터 2016. 2. 3일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 이사회

[3] 요약

성명	구분	직위	경력	최초선임	임기만료	재임기간	담당위원회
위성호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은행 입행 · 신한은행 PB사업부 부장 · 신한지주 부사장 · 신한은행 WM그룹 부행장 · 신한카드 리스크관리부문장 · 신한카드 대표이사 	'13. 8. 27	'16. 8. 26	30개월	사추위
김경림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입행 · 한국은행 이사 ·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고문 	'11. 3. 22	'15년 결산기 정기주총	59개월	리스크위 사추위
김동환	사외이사	감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3. 3. 27	'15년 결산기 정기주총	35개월	감사위 보상위
박평조	사외이사	보상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 (주)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 · 미마츠기업 주식회사 사장 	'14. 3. 31	'15년 결산기 정기주총	23개월	보상위 리스크위
성재호	사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 세계국제법협회 한국회장 	'15. 3. 26	'15년 결산기 정기주총	11개월	감사위 사추위
임보혁	기타 비상무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은행 입행 · 신한은행 전략지원부 부장 · 신한금융지주 리스크담당 상무 ·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15. 8. 28	'16. 2. 3	5개월	리스크위 보상위

2. 이사회

김성화	상임 이사	상근 감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집행 ·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과 과장 · 은행감독국장 ·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 · 신한카드 상근감사위원 	'14. 3. 31	'15년 결산기 정기주총	23개월	감사위
-----	----------	----------------	---	------------	---------------------	------	-----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5년에는 총 11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97%[정기이사회회의 경우 93%, 임시이사회 100%]입니다.

'15. 2월에 개최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14. 12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당사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을 규정하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고, 경영진의 평가 및 보상 관련해서는 '보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의거해 '15. 3월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보상위원회 설치 및 위원선임을 의결하였습니다.

'15. 8월에 개최된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는 해외시장에서의 미래 성장동력 추가 확보를 위해, 성장성 및 수익성이 다른 Emerging 시장 대비 우수한 인도네시아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초기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인도네시아 Captive 시장을 보유한 살림그룹의 파이낸스사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사회에 보고 할 계획입니다.

또한, '15. 12월에 소집된 제10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당사 BIG to GREAT 달성을 위해 수립된 2018년 중기 전략목표(Finnovate to 2018) 및 세부 핵심전략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심도있는 논의 및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 2015. 2. 4일(14:50~16:30) / 안건 통지일 : 2015. 1. 23일

2. 이사회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반장식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소재광	김성화	
1. 이사 성명	위성호	반장식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소재광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제29기 결산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이사 아닌 경영진 임명 요청 동의를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1) 보고안건명 : '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보고, '14년 감사결과 보고

2) 의결안건 내용

- ① 제29기 결산실적 확정을 위한 재무제표안(5,501억원 배당)에 대한 승인
- ② 당사 이사 아닌 경영진(부사장 3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
- ③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승인

[나] 2015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2015. 2. 25일(10:20~12:30) / 안건 통지일 : 2015. 2. 1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반장식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소재광	김성화	
1. 이사 성명	위성호	반장식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소재광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지배구조 관련 정관 및 주요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이사회

③ '14년 경영진 평가등급 확정 및 단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찬성	가결							
④ '15년 경영진등 보상 체계에 관한 사항	찬성	가결							
⑤ '15년 이사 아닌 경영진 보수에 관한 사항	찬성	가결							
⑥ '15년 경영진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찬성	가결							

※ 비고

1) 보고안건명 : '14년 경영실적 보고, '14년 하반기 계열사간 거래 결과 보고,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보고, '14. 4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14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보고

2) 의결안건 내용

- ①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용 반영을 위한 정관 및 주요규정 제/개정 승인
- ②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및 소집에 대한 승인
- ③ '14년 경영진 평가결과 확정 및 단기성과급 지급 승인
- ④ '15년 경영진의 보상체계[기본급,장/단기 성과급 등] 개편 승인
- ⑤ '15년 이사 아닌 경영진(부사장)의 보수 결정
- ⑥ '15년도 경영진 평가체계에 대한 승인

[다] 201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015. 3. 26일(16:10~17:40) / 안건 통지일 : 2015. 3. 1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소재광	김성화	
1. 이사 성명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소재광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보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이사회

④ 사외이사 평가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찬성	가결							
⑤ '15년 이사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	찬성	가결							
⑥ 채권발행 일괄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찬성	가결							
⑦ 위안화표시 해외 사모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찬성	가결							

※ 비고

1) 의결안건 내용

- ①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선임 - 김경림 사외이사
- ②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보상위원회 신설
- ③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신규 이사진이 구성됨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 ④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 평가방법 결정
- ⑤ '15년 이사 보수 한도 설정 승인
- ⑥ 채권발행 일괄신고서 제출 결의
- ⑦ 위안화표시 해외 사모사채 발행 승인

[라] 2015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15. 4. 10일(08:50~09:50) / 안건 통지일 : 2015. 4. 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소재광	김성화	
1. 이사 성명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소재광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카자흐스탄 해외법인 자본금 증자 및 법인명 변경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의결안건 내용

- ① 카자흐스탄 자회사 자본금 증자, 법인명 변경 결의

2. 이사회

[라] 2015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 2015. 6. 5일(07:40~08:30)/ 안건 통지일 : 2015. 5. 2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소재광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15년 하반기 계열사간 거래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 1) 보고안건명 : '15.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보고, '15. 1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 2) 의결안건 내용
 - ① '15년 하반기 기준 당사와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형별 거래한도를 설정
- 3) 박평조이사 불참사유 : 재일 사외이사로, 일본내 소속회사 회의 참석

[마] 2015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 2015. 8. 21일(10:00~11:40) / 안건 통지일 : 2015. 8. 1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소재광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1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② 이사 아닌 경영진 임명 요청 동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③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④ 인도네시아 파이낸스社 지분 인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2. 이사회

※ 비교

1) 보고안건명 : '15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보고, '15년 상반기 계열사간 거래 결과 보고, '15. 2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보고

2) 의결안건 내용

- ①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 ② 이사 아닌 경영진(부사장 1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선임 - 손기용 부사장
- ③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승인
- ④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 법인 지분 인수 승인

[바] 2015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2015. 9. 17일(15:00~16:00) / 안건 통지일 : 2015. 9. 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임보혁	김성화		
1. 이사 성명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임보혁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해외 사모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1) 의결안건 내용

- ① 자금조달을 위한 해외 사모사채 발행 결의

[사] 2015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 2015. 10. 23일(10:00~11:00) / 안건 통지일 : 2015. 10. 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임보혁	김성화		
1. 이사 성명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임보혁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① 신한카드 2015-1자산 유동화 거래 및 관련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이사회

② 채권발행 일괄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찬성	가결						
------------------------	----	----	----	----	----	----	----	----

※ 비고

1) 의결안건 내용

- ① 당사 영업 및 차입금 상환용 자금조달을 위해, 자산유동화 계약 체결
- ② 사채의 모집을 위한 채권발행 일괄신고서 제출에 대한 승인 요청

[아] 2015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 2015. 11. 12일(08:00~09:00) / 안건 통지일 : 2015. 10. 2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임보혁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2016년 상반기 계열사간 거래 한도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보고안건명 : '15. 3분기 경영실적 보고,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보고, '15. 3분기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2) 의결안건 내용

- ① 8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신규 이사진이 구성됨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 ② '16년 상반기 기준 당사와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형별 거래한도를 설정

[자] 2015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2015. 12. 10일(16:00~18:00) / 안건 통지일 : 2015. 11. 2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임보혁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2. 이사회

4. 의결안건

① '16년 경영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가결							
② '18년 중기전략(안)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가결							
③ 지점 이전에 관한 사항	찬성	가결							

※ 비교

1) 보고안건명 : '16년 리스크한도 설정 보고, 그룹 바젤 II 내부승급법 승인 관련 소매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보고

2) 의결안건 내용

- ① 2016년 전략방향, 핵심전략과제 및 재무계획에 대해 승인
- ② BIG to GREAT 달성을 위해 2018년 중기 전략목표(Finnovate to 2018) 및 세부핵심전략과제를 승인
- ③ 임차비용 절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여의도지점' 이전 승인

[차] 2015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 2015. 12. 11일(09:00~10:00) / 안건 통지일 : 2015. 12. 1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임보혁	김성화	
1. 이사 성명	위성호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임보혁	김성화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사항 없음]							
4. 의결안건								
① '16년 조직개편(안) 승인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준법감시인 임면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교

1) 의결안건 내용

- ①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응, 조직과 인사운영의 유연성 확보, 경영 효율화 관점의 조직 체계 준비를 개편방향으로 하는 '16년 조직개편(안)에 대해 승인
- ② 기존 준법감시인(주홍수 상무)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준법감시인(배연태 본부장)을 선임

2. 이사회

라. 평가

사외이사 평가 관련 본 연차보고서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바. 사외이사 평가 참조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 평가 관련 : 본 연차보고서 7.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 마.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 [2]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참조



0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Shinhan Card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취지 및 적극적 요건을 반영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26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 그 내용 전부를 모범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배구조 내부규범 내 제3장 제1절 '사외이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여 그 역할은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조, 제3조, 제9조, 제13조]

위원회의 권한은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등이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9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3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4조, 제15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조] 아래 외부 법령 또는 내규 상 적극적 자격요건, 소극적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신한금융그룹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의 특수성을 추가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전문성과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에 의거하여 다양한 추천경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주주, 외부전문기관, 지원부서 등]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 및 제13조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의 관련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검증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을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관련 검증결과 및 추천내용 적정성을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가 더욱 면밀히 살피도록 규정하여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당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취지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하여, '15.2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 외부자문기관 등 다양한 추천 경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이나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선정/관리하며, 연2회 이상 후보군 관리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후, 2015년 8월 21일 최초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의 후, 동일자 이사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매년 2월, 8월 2차례 후보군 관리내역을 이사회에 보고 예정입니다.]

[추천절차 세부 내용]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 이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이사회를 통해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회의 목적사항으로 이사 선임의 건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5조에 의거,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 등과의 관계 /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등을 공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1 조에 의거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보고 하고, 이사 선임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다. 구성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3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8조]. 2015년 12월 현재 각 위원은 금융, 경영, 법률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검증된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성명	이사 구분	직위	임기
위성호	상임이사	위원장	'15. 8. 27 ~ '16. 8. 26
김경림	사외이사	위원	'15. 3. 26 ~ '15년 결산기 정기주총
성재호	사외이사	위원	'15. 3. 26 ~ '15년 결산기 정기주총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반장식 위원, '15. 3. 26일자로 퇴임, 성재호 위원, '15. 3. 26일자로 선임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요 주주와 외부자문기관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2015년 2차례(2. 25일, 8. 21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년 3월 1명의 사외이사가 퇴임(반장식 이사)함에 따라,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국제법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선임(성재호 이사)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5년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5. 2. 25일(09시30분~09시50분)

/ 안건통지일 2015. 2. 1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반장식	김경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1.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김경림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	가결
[김동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성재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사추위 위원 본인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불가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나] 2015년도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5. 8. 21일(09시~09시30분)
/ 안건통지일 2015. 8. 1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위성호	김경림	성재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개요

사외이사 후보 성재호는 2015년 2월 25일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4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고, 사외이사 후보 김경림은 2011년부터, 후보 김동환은 2013년부터, 후보 박평조는 2014년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와 신한금융그룹 순계열회사로부터의 거래관계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2015년 2월 25일 제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총 4명을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이후 2015. 2월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7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안건을 결의하였고, 2015. 3월 개최된 2015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최종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2-1] 김경림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성명 : 김경림

[나]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42년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② 출신학교

- 경북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③ 경력

- 일반경력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4. 1월	2015. 3월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 고문
2008. 9월	2013. 12월	법무법인 지평 지성 고문
2004. 4월	2008. 9월	법무법인 지성 상임고문
2002. 4월	2003. 4월	한국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2000. 5월	2002. 3월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1999. 3월	2000. 5월	부산은행 은행장
1997. 3월	1998. 12월	은행감독원 부원장보
1995. 7월	1997. 3월	한국은행 이사
1994. 4월	1995. 7월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장
1991. 4월	1994. 4월	은행감독원 여신관리국장
1990. 3월	1991. 4월	은행감독원 금융개선국장
1988. 9월	1989. 3월	은행감독원 임원실장
1983. 12월	1986. 7월	한국은행 자금부 차장
1979. 5월	1980. 4월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과장
1976. 8월	1979. 5월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조사역
1966. 2월		한국은행 입행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07. 5월	2010. 5월	삼성증권 이사회 의장
2004. 5월	2010. 5월	삼성증권 사외이사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④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2011년 3월 22일~현재
- 회사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 주요실적(2015년 기준) : 제29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경영진 평가/보상체계, 고객정보 제공 관련 지침 개정, '15년 경영계획, 조직개편 승인 등
- 이사회 참석횟수 : 11회 중 11회 모두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내위원회 참석수 :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중 6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회 중 2회 [참석률 100%]
- 기타사항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2012. 3월~현재]

[다]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김경림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위성호 사장입니다. 또한, 2011년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재우 사장이며, 당시 김경림 이사는 외환은행 및 부산은행 은행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금융기관의 경험과 증권사 사외이사, 법무법인 고문 등의 활발한 대외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외이사에 적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1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경림 사외이사와 2007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재우 사장, 2013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성호 사장은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라]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자 추천이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경림 고문은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 고문으로서 재직 이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을 거쳐 부산은행, 외환은행 은행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금융업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는 물론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법률적 지식에 기반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사외이사 후보로 再추천 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김경림 사외이사는 기존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내역과 전문성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 ①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김경림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 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㉞ 전문성

김경림 사외이사 후보자는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 고문 재직 이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을 거쳐 부산은행과 외환은행 은행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 및 법률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㉟ 직무공정성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경림 사외이사 후보자는 2011년에 최초 선임 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1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㉔ 윤리성, 책임성

김경림 후보자는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 고문으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㉕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80 시간이 소요되는데, 김경림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공분야/경영학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2016. 1. 4~1. 22일 진행 된, 2015년도 사외이사 평가에서 전문성/직무공정성/윤리책임성/충실성 순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5등급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 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재추천하는 경우에는, 당사 및 이사회에 대한 기여, 이사회 등 참여도 내역, 평가 등 연임을 뒷받침할만한 자질과 능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외이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5년 2월 25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2명의 찬성[김경림 이사 본인의결 제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2] 김동환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성명 : 김동환

[나]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60년

② 출신학교

- 배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

③ 경력

- 일반경력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1997. 4월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8. 11월	현재	은행법학회 부회장
2011. 7월	2012. 6월	금융학회 부회장
2010. 5월	2011. 4월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 실장
2009. 2월	2011. 2월	금융감독원 재제심의위원회 위원
2008. 10월	2009. 10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 위원
2007. 3월	2009. 3월	감사원 금융/재정분과 자문위원
2005. 7월	2007. 7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분과위 자문위원
2002. 4월	2004. 3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1998. 4월	2006. 3월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 전문위원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990. 4월	1997. 3월	일본 문부성 국비연구원
1986. 7월	1990. 3월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07. 3월	2010. 3월	전북은행 사외이사

④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2013년 3월 27일~현재
- 회사명 : 신한카드 주식회사
- 주요실적(2015년 기준) : 제29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경영진 평가/보상체계, 고객정보 제공 관련 지침 개정, '16년 경영계획, 조직개편 승인 등
- 이사회 참석횟수 : 11회 중 11회 모두 참석 [참석률 100%]
- 이사회내위원회 참석수 : 감사위원회 8회 중 8회, 보상위원회 1회 중 1회[참석률 100%]

[다]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김동환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위성호 사장입니다. 또한, 2013년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재우 사장이며, 당시 김동환 이사는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은행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 활발한 대외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외이사에 적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3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동환 사외이사와 2007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재우 사장, 2013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성호 사장은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라]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자 추천이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동환 박사는 한국금융연구원 재직 이전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전북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며, 2013년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는 물론 감사위원회에서도 경제학 지식에 기반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사외이사 후보로 再추천 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김동환 사외이사는 기존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내역과 전문성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김동환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 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㉞ 전문성

김동환 사외이사 후보자는 한국금융연구원 재직 이전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전북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㉟ 직무공정성

김동환 사외이사 후보자는 2013년에 최초 선임 시와 마찬가지로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3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㊱ 윤리성, 책임성

김동환 후보자는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㊲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80시간이 소요되는데, 김동환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공분야/경영학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2016. 1. 4~1. 22일 진행 된, 2015년도 사외이사 평가에서 전문성/직무공정성/윤리책임성/충실성 순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5등급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 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재추천하는 경우에는, 당사 및 이사회에 대한 기여, 이사회 등 참여도 내역, 평가 등 연임을 뒷받침할만한 자질과 능력

3.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외이사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5년 2월 25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2/3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3]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성명 : 박평조

[나]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43년

② 출신학교

- 와세다대학교 이공학부 건축학과 졸업

③ 경력

- 일반경력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09. 7월	현재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고문
2006. 3월	현재	일본 미마츠기업 주식회사 사장
1997. 6월	현재	재일 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직선 중앙위원
1988. 5월	현재	사회복지법인 미마츠선린회 이사장
2002. 4월	2004. 3월	삿포로 쓰쓰기노 비루진구협회 부회장
1999. 4월	2005. 4월	재일 대한민국민단 북해도지방본부 단장
1997. 8월	1999. 3월	신용조합 북해상은 이사장
1996. 4월	1999. 3월	재일 대한민국민단 북해도 지방본부 의장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993. 4월	1996. 3월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정책기획담당]
1992. 3월	2005. 3월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1990. 12월	1994. 5월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1988. 5월	2006. 3월	주식회사 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
1986. 4월	1992. 3월	북해도 한국 청년상공회 회장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03. 3월	2004. 3월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④ 사외이사 경력 :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박평조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위성호 사장입니다. 당시 박평조 이사는 일본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주)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적인 회사 경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외이사에 적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4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박평조 사외이사와 2013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성호 사장은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라]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자 추천이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박평조 이사는 일본 삿포로 신용금고 총대표,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재일 한국 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과 (주)무라오카식품, 미마츠기업 등의 성공적인 회사 경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카드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박평조 사외이사는 성공적인 회사경영 전문성, 재일동포 사회 리더로서의 경력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박평조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 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④ 전문성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자는 일본 북해도 한국학원 이사장, (주)무라오카식품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는 등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적인 회사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영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㉔ 직무공정성

박평조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㉕ 윤리성, 책임성

박평조 후보자는 일본 미마츠기업 사장으로서는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㉖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80시간이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공분야/경영학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2016. 1. 4~1. 22일 진행 된, 2015년도 사외이사 평가에서 전문성/직무공정성/윤리책임성/충실성 순 지표에서 매우 우수인 5등급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 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재추천하는 경우에는, 당사 및 이사회에 대한 기여, 이사회 등 참여도 내역, 평가 등 연임을 뒷받침할만한 자질과 능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외이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5년 2월 25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4] 성재호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성명 : 성재호

[나] 후보자의 인적사항

① 출생연도 : 1960년

② 출신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석/박사

③ 경력

- 일반경력

기 간		주요 경력
From	To	
2016. 1월	현재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회장
2015. 1월	2015. 12월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014. 1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자문위원
2014. 1월	현재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문위원
2012. 1월	현재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
2011. 2월	2013. 1월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 처장
2009. 3월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 1월	2010. 12월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2009. 1월	2009. 12월	국제법 평론회 회장
2009. 1월	2010.12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008. 1월	2009.12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07. 1월	2008.12월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2007. 1월	2009.1월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처장
2005. 2월	2007. 1월	성균관대학교 학생처 처장
2005. 1월	현재	NIS 국제범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2. 10월	2009. 2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교수
1994. 3월	2002. 9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1993. 8월	1994. 2월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조교수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해당사항 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재호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제안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위성호 사장입니다. 당시 성재호 이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입학처/기획조정처 처장,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제법평론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 학계/행정계 및 국제법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바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외이사에 적임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② 후보자와의 관계

2015년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성재호 사외이사와 2013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성호 사장은 업무 외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라]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자 추천이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성재호 이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입학처/기획조정처 처장,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제법평론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 학계/행정계 및 국제법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신한카드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③ 후보자 추천 경로

성재호 사외이사는 국제법 분야 및 학계/행정계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 등을 근거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바]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제50조의4
- 평가 : 법령상 위반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성재호 후보는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 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㉔ 전문성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성재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성균관대 교수,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제법평론회/국제경제법학회/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㉔ 직무공정성

성재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㉕ 윤리성, 책임성

성재호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학대학 교수로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㉖ 충실성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의안의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연간 약 80시간이 소요되는데,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본인 소명

관계법령상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공분야/경영학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신한카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2016. 1. 4~1. 22일 진행 된, 2015년도 사외이사 평가에서 전문성/직무공정성/윤리책임성/충실성 순 지표에서 매우 우수인 5등급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2015. 2월에 지배구조내부규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재추천하는 경우에는, 당사 및 이사회에 대한 기여, 이사회 등 참여도 내역, 평가 등 연임을 뒷받침할만한 자질과 능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외이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15년 2월 25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2015년 3월 26일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명이며, 이중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1년의 임기로 연임하였고, 반장식 사외이사는 퇴임하여 성재호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 등 출석율	평가 여부
반장식	'10. 3. 23 ~	-	100%	
김경림	'11. 3. 22 ~	연임	100%	○
김동환	'13. 3. 27 ~	연임	100%	○
박평조	'14. 3. 31 ~	연임	89%	○
성재호	'15. 3. 26 ~	신규 선임	100%	○

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취지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하여, '15. 2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자로 후보군을 구성하며, 신한금융그룹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일동포 주주대표 사외이사 후보군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군의 적극적 자격요건(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과 법률상 소극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상시 점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15. 2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을 연 2회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

[3] 후보군 현황

- 결의 일자 : 2015년 8월 21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보고 일자 : 2015년 8월 21일 제3차 정기 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금융	5	15%	
경제	5	15%	
경영	5	15%	
회계	5	15%	
법률	5	15%	
재일 동포	5	15%	
재선임대상	3	10%	
합계	33		

추천 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9%	
주주	5	15%	
사외이사 인력뱅크	9	27%	
기타	16	48%	
합계	33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년 2회이사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

3.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여 외부자문기관(사외이사 인력뱅크 등)과 주주로부터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21일 09시 제2차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외이사 후보군을 동일자 10시에 개최된 제3차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군은 금융전문가 4명, 경제전문가 4명, 경영전문가 4명, 회계전문가 4명, 법률전문가 4명, 재일동포 5명, 재선임대상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1]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

- 부서명 : 전략기획팀
- 인원구성 : 부서장1명(총괄) / 부서원15명(이사회업무 담당직원 2명)
- 담당업무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안건 및 사외이사 후보군 Pool관리 업무 지원

[2]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업무 보고 및 지원 내용

일자	보고 및 지원내용
2015. 7. 1~ 8. 20	2015년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선임원칙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군 탐색
2015. 8. 21	사외이사 후보자 검증결과 보고
2015. 12. 15~12. 31	2015년도 사외이사 평가 진행방법안 마련



0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Shinhan Card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이사 승계계획 등을 포함하여 그룹 전체의 경영승계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0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대표이사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2월 24일 지주회사 이사회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종료 사유와 시기,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관리방법, 비상승계계획,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 인선 기준 및 심의 관련 사항 등입니다.

가. 최고경영자(대표이사) 경영승계 내부규정

<붙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2004. 5. 1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010. 2. 26 시행]
- ② 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제외한 위원은 자회사 경영관리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10. 2. 26 시행]
- ③ 회사의 이사아닌 경영진 중 당해 자회사 경영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제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결의 및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11. 2. 8 개정]
- ④ 위원회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결의사항 등]

-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 4. 자회사 대표이사 이외의 경영진 후보의 인선기준에 관한 사항
 - 5. 자회사 대표이사 이외의 경영진 후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6.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파리바 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단, 신한캐피탈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날의 전일까지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의 인선기준에 관한 사항
 - 2. 자회사의 경영진 후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3. 자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등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해 정정할 수 있다.

제6조[자회사 경영승계계획]

-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이 제안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의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③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수립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평가 및 개발활동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 2.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4.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

제7조[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검증]

- ① 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경영승계계획 상의 가속승계 절차를 따른다.
- ④ 회사는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자회사 대표이사 대행자 및 운영계획,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1.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절차 개요
 - 2.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3.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5.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 6.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 7. 그 밖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계인 출석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범위]

제6조 및 제7조는 자회사 중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단, 신한캐피탈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해 경영 연속성 확보 및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사를 포함한 자회사 CEO 승계프로그램을 2011년에 마련하고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상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경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임기 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당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됩니다.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① 대표이사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7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 규정에서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동법,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동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동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동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하면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며, 후보군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이사 임기만료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되,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추천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최종후보자 추천절차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격요건, 법률요건 등을 고려하여 당사의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대표이사로서 요구되는 전략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대표이사 후보군을 심의합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⑤ 경영승계절차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대표이사 후보자를 위원회 결의로 추천하며, 당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됩니다.

⑥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전사관점 의사결정, 전략실행/추진력, 리더십, 대내외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의 개발 프로그램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육성 후보군의 경영성과 및 개발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심의, 평가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군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비상계획

당사의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상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가속승계 프로세스'를 통해 당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및 회사 운영계획,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신한카드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대표이사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지주회사는 당사의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2015년 8월 19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법규상 결격요건, 자격요건 및 업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위성호 사장을 당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중임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8월 21일 당사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을 확정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결과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15. 8. 19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결의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 8. 21	대표이사 선임 결의	제1차 임시주주총회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7 (임원의 자격요건)
- 평가

당사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7이며 관련 규정에서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동법,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동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동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동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일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위성호 사장을 2015년 8월 당사의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중임 추천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으로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가

2016년 8월 19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된 위성호 후보자는 1985년 신한은행에 입사하여 1999년부터 반포터미널지점장, 강남PB센터장, HR팀장, 경영관리담당상무, 신한금융지주부사장 등의 직을 거쳤으며 2013년 8월부터 당사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를 거치는 동안 Code9, Sally 등 빅데이터 경영체계를 구축 및 가속화하였으며, 급성장하는 핀테크 분야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 카드사 최초로 진출하는 등 업무 수행의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성호 후보자는 경영진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외부에서, 탁월한 리더십, 비전제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러한 위성호 후보자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 및 내외규상의 징계여부 등과 건강상태 등을 검증하고 2016년 8월 21일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였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대표이사 후보군 관련 지침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상 지주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및 최종 후보자 추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 경영승계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여 미래의 자회사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0일 개최된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총 17명의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육성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지주회사 HR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육성후보군별 경영성과, 개발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구분	후보군 수	추천 경로
내부	15명	2015년 5월 20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육성후보군 선정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경영승계 계획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HR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R팀은 팀장과 팀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 운영 등 핵심인재 육성 및 관리, 경영진 성과 보상 및 평가, 그룹 인사정책 방향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R팀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에 따라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 경영승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HR팀은 동 위원회가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과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내용을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는 실무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HR팀
- 직원수 : 총 6명
- 운영 내역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15. 2. 3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 2. 12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 2. 24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 2. 25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 3. 12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 5. 20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 개정(안) 심의 실무 지원 자회사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 및 평가, 개발계획(안)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 8. 19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보고 실무 지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등 보고 실무 지원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 10. 29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8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 12. 29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 관련 실무 지원	제9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05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Shinhan Card



5.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이사인 경영진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와 검증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대표이사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참고로 신한카드의 대표이사 자격요건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있으며, 자회사경영관리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2015년도에 총9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후보군 선정 및 평가, 개발계획 심의에 대한 검토 및 결의를 하였으며, 2015년도에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임기만료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의 신한은행장 선임에 따라 각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나.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구성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2015년 12월말 기준) 위원장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5년 3월 25일에 대표이사 회장과 5명의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2015년 5월 20일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15. 3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한동우	상임	위원장	2014. 3. 26	2015. 3. 25
김석원	사외	위원	2014. 3. 26	2015. 3. 25

5.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이상경	사외	위원	2014. 3. 26	2015. 3. 25
김기영	사외	위원	2014. 3. 26	2015. 3. 25

<2015.3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한동우	상임	위원장	2015. 3. 25	2016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권태은	사외	위원	2015. 3. 25	2016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김석원	사외	위원	2015. 3. 25	2016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이상경	사외	위원	2015. 3. 25	2016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고부인	사외	위원	2015. 3. 25	2016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이만우	사외	위원	2015. 3. 25	2016년 개최 정기주주총회일

다.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5년도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총 9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결의안건 14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15년 5월에 개최된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는 17명의 자회사 대표이사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고, 육성후보군 평가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임기만료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의 신한은행장 선임에 따라 각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5년도 제1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년 2월 3일>

5.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한동우	김석원	이상경	김기영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석원	이상경	김기영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5년도 제2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년 2월 1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한동우	김석원	이상경	김기영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석원	이상경	김기영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5년도 제3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년 2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한동우	김석원	이상경	김기영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석원	이상경	김기영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5년도 제4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년 2월 2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한동우	김석원	이상경	김기영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석원	이상경	김기영	

5.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5년도 제5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년 3월 1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김석원	이상경	김기영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5년도 제6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년 5월 2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권태은	김석원	이상경	고부인	이만우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원장 선임
나. 2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자회사경영승계 계획 개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라. 4호 안건 [자회사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후보군 선정
마. 5호 안건 [자회사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및 개발 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5년도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년 8월 1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권태은	김석원	이상경	고부인	이만우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등 보고]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자회사 경영 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5년도 제8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년 10월 2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한동우	권태은	김석원	이상경	고부인	이만우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년도 제9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2015년 12월 2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한동우	권태은	김석원	이상경	고부인	이만우	
1. 이사 성명	한동우	권태은	김석원	이상경	고부인	이만우	
2. 참석 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자회사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2015년 8월 19일 제7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법규상 결격요건, 자격요건 및 업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위성호 사장을 임기 1년의 당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중임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06

감사위원회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Shinhan Card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고,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운영하되,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2항 및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이사회 안건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의거 상근감사위원의 사전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상감사 사항 등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상 상근감사위원은 위임사항 중 중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근감사위원은 2015년 11회의 이사회 안건 전부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진행하여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15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상법 402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하거나, 이사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즉시 보고(감사위원회규정 제18조)하여야 합니다.

6.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예산의 배정 및 전용, 일정 금액 이상의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 체결 및 계약 주요내용의 변경, 제규정의 개폐 등 경영진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라 상근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또는 사후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인 감사팀은 2015년 중 자산실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공시통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 감사수행 전략, 감사품질 관리계획, 회계감사 관련 감리 및 소송 내역, 감사 참여 인원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26일 제2차 감사위원회는 지주 연결기준 감사 업무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지주회사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을 제29기('14. 1. 1~12. 31)부터 제31기 ('16. 1. 1~12. 31)까지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2015년 중 당사와 삼정회계법인과 감사업무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비감사 업무 계약은 없습니다.

내용	연간보수	투입시간 [2015년 9월기준]
분기,반기,연간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654(백만원)	4,080(시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삼정회계법인 및 제휴 회계법인인 KPMG와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은 지주회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지주회사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사항에 해당하며, 외부감사인 간 비감사업무에는 세무조정 업무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일부 비감사업무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계획/실시/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 및 일상감사 업무 등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6. 감사위원회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업무 수행 전반 및 일상감사 등에 대해 상근감사위원에게 권한을 위임 중이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 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15년 총 4회[1차 임시, 2차 정기, 3차 정기, 4차 정기] 감사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①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합니다. [상법 제447조의 4,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감사위원회는 2016년 2월 24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2015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결의하였으며, 결의한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하여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2015년 11월 5일,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의 제재사유로 회사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6백만원)를 통보 받은바 있으며, 과태료는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기관경고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 및 행정소송 중]

②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등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회계감

6. 감사위원회

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일 현재 삼정회계법인은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3월 초 완료 예정으로 공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당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내부회계관리부서로부터 결산실적을 보고받아 심의 중이며, 2015년 3분기 김성화 상근감사위원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결산 실적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 부서의 감사위원회 분기별 결산실적 보고 시 외부감사인이 결산실적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발표토록 요청하여 2015년 11월 12일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부터 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③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등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 2016년 2월 4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에, 2015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마]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평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보고내부통제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제18조]

2016년 2월 4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5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관련 규정과 모범기준에 근거, 재무제표 왜곡을 예방 및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설계된 통제활동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바]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위원회는 연말 감사팀의 익년 연간 감사계획을 승인 결의하고,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감사실시결과를

6. 감사위원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제18조]

2014년 12월 11일 제8차 감사위원회는 2015년 연간 감사계획을 승인하였고, 2015년 6월 5일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와 2015년 8월 21일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 2015년 11월 12일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감사진행상황을 심의하였으며, 2016년 2월 4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5년 연간 감사업무추진실적을 심의 후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진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13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2015년 3월 26일 제2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제29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감사 결과, 정기주주총회 의안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고, 상근감사위원은 같은 날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2015년 8월 21일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201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감사결과 임시주주총회 의안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고, 상근감사위원은 같은 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아] 감사위원회규정 개정

감사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이사회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의 이사회 부의 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영한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차] 상근감사위원의 전략과제 수립 및 평가

감사위원회는 2014년 2월 26일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상근감사위원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상근감사위원의 전략과제 수립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4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5년 상근감사위원 전략과제 수립(안)을 결의하였고, 2016년 2월 4일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2015년 상근감사위원의 주요 실적을 심의하여 2015년 상근감사

6. 감사위원회

위원 평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카]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의 적정성 평가

감사위원회는 연 1회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제18조]

2016년 2월 24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당사 내부통제시스템은 회사 각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고, 이를 조직과 업무분장 상에 반영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 지는 등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타]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에 관한 사항 및 내부통제기준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의 보고내용을 심의합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내부통제기준 제9조]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준법감시인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활동계획을 보고받아 준법감시인 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2015년 2월 25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2015년 활동계획을, 2016년 2월 24일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2015년 추진실적을 보고하였고, 감사위원회는 보고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회사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합니다. [정관 제37조, 감사위원회규정 제7조]

2015년 2월 25일 제1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는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임기가 만료되는 반장식 사외이사[감사위원장]를 제외한 김동환 사외이사[감사위원]를 사외이사로 재 추천하고,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률 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성재호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6. 감사위원회

2015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동환 사외이사가 연임되었으며, 성재호 교수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7조]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 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015년 3월 26일 개최된 제2차 임시 이사회에는 감사위원회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김동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 하였고, 법률전문가인 성재호 사외이사를 신규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자는 이사 임기만료일자와 동일한 1년입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7조]

2015년 3월 26일 제3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반장식 감사위원장의 후임으로 김동환 감사위원을 신임 감사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2015년 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2명의 사외이사에 김성화 상근감사위원을 포함 총 3명으로 구성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화 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료출신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제4호]합니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

6. 감사위원회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상근감사위원	선임일	임기 만료일	경력
반장식	사외	위원장[전]	'10. 3. 23	'15. 3. 26.	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장 기획예산처 차관 서강대학교 교수
김동환	사외	위원장[현]	'13. 3. 27	'15년 결산기 정기주총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의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화	상임	상근감사위원	'14. 3. 31	'15년 결산기 정기주총	은행감독국장 신용감독국장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
성재호	사외	위원	'15. 3. 26	'15년 결산기 정기주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 차장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5년에는 총 8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감사위원 모두 100% 참석 하였습니다. 결의사항 8건, 보고 및 심의사항 14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감사팀장으로 하여금 각 감사위원별로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실시토록 하고, 사전설명 당시 감사위원의 추가 요청자료 및 의견 내용이 본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 감사위원회는 2014년 상근감사위원 평가의 건, 제29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제29기 정기

6.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2016년 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중 감사위원회는 2014년 감사결과 보고, 2014년 결산실적 심의,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2014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2014년 공시통제의 적정성 검토,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준법감시팀 내부통제 결과 및 계획, 2015년 상반기 결산실적, 2015년 감사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김동환 감사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출신으로서 타 회사의 감사위원회 활동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회계 관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내부통제 역할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재호 감사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서 법률 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측면에서 준법감시인의 활동, 주요 소송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성화 상근감사위원은 금융직 관료 경험을 통한 국내 경제와 금융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 현황 및 내부통제, 사전적 Risk 통제를 통한 건전 경영 확보, 선제적 자체점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5년도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15. 2. 4 (14:00~14:30) / 안건 통지일 : 2015. 1. 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김동환	반장식	김성화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4년 결산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②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③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④ 2014년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6. 감사위원회

4. 의결안건

① 2014년 상근감사위원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2015년 상근감사위원 전략과제 수립의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2건, 보고 및 심의사항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4년 상근감사위원 평가의 건과 관련하여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이 상근감사위원 평가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여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의 건전성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강화,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 상근감사위원 전략과제 수립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심의안건인 2014년 감사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김동환 감사위원은 향후 경기가 더 악화되면 고액 횡령 등 금융사고 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2015년도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15. 2. 25 (9:50~10:20) / 안건 통지일 : 2015. 2. 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김동환	반장식	김성화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4년 내부통제시스템 보고 운영평가	특이의견 없음
② 2014년 공시통제의 적정성 검토 보고	특이의견 없음
③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안]	특이의견 없음
④ 준법감시팀 내부통제 결과 및 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제29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참석	찬성	찬성	가결
--------------------	----	----	----	----

6. 감사위원회

제1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 보고 및 심의사항 4건 등 총5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제29기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결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준법감시팀 내부통제 결과 및 계획 보고건과 관련하여 김동환 감사위원은 준법감시팀의 역할 중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카운셀링 업무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2015년도 제2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15. 3. 26 (15:30~15:50) / 안건 통지일 : 2015. 3. 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김동환	반장식	김성화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견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2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제29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과 관련하여 김동환 감사위원은 재무상태표 중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 평가이익, 상각채권추심이익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와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감시장치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결의하였습니다.

6. 감사위원회

[라] 2015년도 제3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15. 3. 26 (17:40~17:50)/ 안건 통지일 : 2015. 3. 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김동환	성재호	김성화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성재호 감사위원은 국내 경제와 금융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계속 담당할 김동환 감사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고, 김성화 상근감사위원이 동의를 표하여 김동환 감사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마] 2015년도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15. 6. 5 (07:00~07:40) / 안건 통지일 : 2015. 5. 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김동환	성재호	김성화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5년 1분기 결산실적	특이의견 없음			
② 2015년 감사 진행사항 (2015년1월~5월)	특이의견 없음			

제2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보고 및 심의사항 2건을 논의하였습니다.

2015년 1분기 결산실적, 감사 진행상황 보고(2015년 1월~5월)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바] 2015년도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15. 8. 21 (09:30~10:00)/ 안건 통지일 : 2015. 8. 1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김동환	성재호	김성화	비고

6. 감사위원회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5년 상반기 결산실적	특이의견 없음			
② 2015년 감사 진행상황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① 2015년 제 1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 보고 및 심의사항 2건 등 총 3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5년 제 1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부의안건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음을 결의하였습니다.

2015년 감사 진행상황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김성화 상근감사위원은 감독원 수검을 대비해서 준법감시팀과 공동으로 사전 점검을 진행한 사실과 그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사] 2015년도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15. 11. 12 (09:00~ 09:30)/안건 통지일: 2015. 10. 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김동환	성재호	김성화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① 2015년 3분기 결산실적	특이의견 없음			
② 2015년 감사 진행상황 (2015년 8월~10월)	특이의견 없음			

제4차 정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보고 및 심의사항 2건을 논의하였습니다.

2015년 감사 진행상황(8월~10월)의 건과 관련하여 성재호 위원은 모집인 관리를 철저히 하되, 모집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동환 감사위원장이 불법모집 점검체계를 준법감시팀으로 일원화된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하고 적정하게

6. 감사위원회

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 2015도 제4차 임시 감사위원회 : 2015. 12. 10(16:00~16:30) / 안건 통지일 : 2015. 11. 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1. 이사 성명	김동환	성재호	김성화	비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2016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차 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사항인 2016년 감사계획의 건과 관련하여 김동환 감사위원은 신한카드가 외국에서 할부 리스 영업을 하는지 질의한 후, 자동차 할부 영업시 자동차 판매처와 금융회사와의 관계에서 책임소재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신한카드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서 감사팀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감사위원회 감사보조조직의 명칭은 '감사팀'으로 감사팀장이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부장 1명, 부부장 5명, 차장 5명, 과장 3명, 대리 1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은 사전적 Risk 통제를 통한 건전 경영 확보, 정도 경영 체계 정착,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따뜻한 금융의 실천, 대외 수검 및 이슈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연초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연 1회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6. 감사위원회

[주요보고내용]

일자	대상	보고 내용
1. 26	회계팀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
2. 13	준법감시팀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보고
2. 26	자금팀, 회계팀 등	공시통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3. 30	정보보호팀 등	연간정보보호감사계획수립 보고
연 2회	지점 (8점)	지점 종합감사 결과 보고
연 2회	콜센터 (14 점)	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고
연 4회	대손상각 심의	분기 대손상각 책임 심의 결과 보고
연 5회	내부감사협의제도	리볼빙 실태점검, 민원처리 관리, 가맹점 관리 등
5. 20	개인신용관리팀	특별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6. 12	정보보호팀 등	정보보호체계 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고
6. 19	올댓서비스팀	신용정보 서비스(MIS) 점검 보고
7. 2	법인영업2팀 등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 점검 결과 보고
7. 29	자금팀	신한금융투자 세미나관련 비위관련자 감사결과 보고
8. 11	CRM영업팀	비대면 마케팅 실태점검 보고
8. 20	회원영업팀	회원영업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10. 6	발급업무팀	발급업무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12. 3	인사팀 등	HR 특별감사 결과 보고
12. 15	부산지점 채권P	부산지점 채권파트 감사 결과 보고
12. 16	제휴영업본부	제휴영업본부(기업영업1~4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12. 21	FD팀	FD팀 종합감사 결과 보고



0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Shinhan Card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1] 총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14. 12)됨에 따라, '15. 2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상위원회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정기주주총회 이후부터 보상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 보상위원회는 경영진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어 운영되는지를 관리하며, 당사 이사회 및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조정한 당사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을 확정하며, 경영진 평가체계의 세부사항 등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또한,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결정하며, 변동보상을 받는 특정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차보상평가에 관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보상위원회 위원은 2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하고,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의 회사[지배구조내부규범 제2조의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경영진 및 특정업무종사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의 확정

당사 보상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가 심의 또는 조정한 경영진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을 확정하게 되며, 보상위원회 신설 이전 보상안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2015년 제1차 정기이사회(2015. 2. 25)에서 2015년 경영진 등의 평가/보상체계를 확정하였고, 2014년 경영진의 평가등급에 연동된 단기성과급 지급에 대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보상체계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수익 창출력 감소 등을 고려한 총보상 규모의 축소, 손익연동 보상 조정 강화, 기존 장기보상제도의 단순화 등이 반영된 전년도 보상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나]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 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2015년 2월 25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보상 체계가 회사의 재무상황 및 리스크와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신설된 보상위원회에서 모범규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이 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2015년 제1차 정기이사회(2015. 02. 25)에서 보상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고,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보상위원회규정에 보상위원회 업무로 연차보상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회사의 보상정책 및 운영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라]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상위원회 규정 제 6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에 따라 변동보상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2월 25일 개최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회사 경영진 등을 변동보상대상자로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 등은 대표이사 사장 1명, 부사장 4명, 상근감사위원 1명 등 총 6명이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정한 특정업무 종사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류	인원수	직명
경영진 등	6명	사장, 부사장 4명, 상근감사위원
특정업무 종사자	0명	해당사항 없음

[마] 보상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 ① 국내 : 회사 경영진 등에 적용
- ② 해외 : 해당사항 없음

나. 구성

[1] 총괄

당사는 보상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와 보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거 2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여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 중 1인 이상을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토록 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보상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보상위원회 위원은 임시이사회(2015. 3. 26)에서 최초 선임하였으며, 3명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 활동내역 및 평가

2015년에 보상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가] 제 2015년도 제 1차 보상위원회 : 3. 26 (17:50~18:00) / (안건 통지일 : 3. 1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박평조	김동환	소재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없음			
4. 의결안건				
보상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1회 보상위원회는 3월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개최된 보상위원회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며, 1건의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결의안건은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박평조 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라.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1] 보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보상위원회 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당사 보상위원회는 회사 경영진 등의 평가보상체계가 건전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하게 수립/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회사의 보상 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보상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관련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위원회의 보상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상위원회 부의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설명시에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안건에 반영합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통하여 위원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 경영진 등에 대한 보상체계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5년도 제1회 보상위원회(2015. 2. 3)에서 당사를 포함한 자회사 경영진 보상체계를 결의하였으며, 당사는 2015년 2월 25일 정기이사회에서 보상체계를 확정하였습니다.

2015년 경영진 등의 보상 체계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업의 구조적 수익 창출력 약화에 대응하여, 경영진 차원에서 총 보상규모를 상당 폭 축소 회사의 절대수익규모와 보상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급 조정제도를 개편, 장기보상제도의 주가 연계를 강화하고자 기존 성과연동형 현금보상제도(Performance Unit)를 폐지하고,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제도(Performance Share)로 일원하여 한 제도의 운영방식을 단순화한 '14년 보상체계 개편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5]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

당사의 리스크관리 부서는 리스크관리팀이며, 준법감시 부서는 준법감시팀입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리스크관리 인원은 21명, 준법감시 인원은 22명(준법감시인 포함, 변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팀의 경우 해당업무 평균 근속연수가 2년, 준법감시팀의 경우 3년 2개월로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인원수 [정규+계약직]	비고
리스크관리팀	21명	
준법감시팀	22명	준법감시인 1명, 변호사 2명 포함

* 2015. 12. 11일 정기인사 반영기준이며, 정기인사전 근속기준은 리스크 2년 9개월, 준법감시 3년 7개월

[6]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리스크관리팀 및 준법감시팀 직원들의 업무성과 목표 설정시 회사의 계량적인 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고유직무에 대한 달성도 평가를 통해 독립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팀의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EVA, RAROC, 회사 위험포트폴리오 관리 역량 개선 실적, 신용평가 모형 개발/개선 실적, 리스크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 실적 등 리스크 고유직무에 대한 달성도 평가를 통해 독립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팀의 경우 준법감시업무, 법무 지원업무, 윤리경영 실천, 정도영업 내부통제 등을 통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의 경우에도 회사의 계량적인 실적과 연동되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연초에 설정한 전략과제 목표에 대한 평가를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7]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4조에 따라 임직원이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8]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성과연계보상 강화 및 직원들의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제도는 회사의 성과지표 달성율에 따라 매년 차등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별손익을 제외한 영업순이익의 일부를 현금과 주식(ESOP)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현금 101.5억원 및 ESOP 96.1억원 등 총 197.6억원을 2,691명에게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ESOP는 96.1억원을 출연하여 229,940주를 직원에게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직원별 연간성과(목표달성도)에 연계하여 보상 지급액이 변동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임금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기본급은 급여규정에 따라 직무/역할의 가치 및 책임의 크기,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등급별로 임금 범위가 달리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1]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경영진 등의 변동보상은 다양한 리스크 지표를 포함한 회사의 성과에 연동하여 보상규모가 설정되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장기보상은 4년간의 회사의 평균성과에 따라 최종 지급금액이 산정되므로 평가기간 중 한 해라도 특정 리스크 요인에 의해 성과가 부진할 경우 장기보상 전체의 지급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회사 평가에 반영되는 주요한 리스크 관련 지표

구분	내용
EVA (Economic Value Added)	$EVA = \text{경상이익} - \text{예상손실}$ $- \{ \text{위험자본} \times \text{자본비용률} + \text{무위험자본비용} \}$
RAROC (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RAROC = \{ \text{경상이익} - \text{예상손실} \} \div \text{위험자본}$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연체율	연체율 = 연체대출금 ÷ 총대출금
연체 2개월 전 비율	연체 2개월 전 비율 = 당월 2개월 연체채권잔액 [년간실적 합] ÷ 전전월 정상채권잔액 [년간실적 합]

[나] 동 측정결과와 보상의 연계 방법

상기 지표 등의 평가 결과는 연단위로 산출되며, 경영진 등의 전체 평가항목 중에서 일정비율 반영되어, 성과급 산정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 지표 이외에도 별도의 비계량 지표가 전략과제 형태로 부여되는 경영진이 있으며, 해당 경영진의 업적평가등급 산정 시 반영되어 보상에도 연계됩니다.

[다] 동 측정지표와 회사 전체 리스크관리 체계의 연계방법

아울러 상기 평가 지표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 지표들로서, 회사 전체의 다양한 리스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2]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가] CEO 및 경영진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CEO 및 경영진은 담당 업무에 따라 그룹KPI, 회사KPI, 담당업무KPI, 담당업무 전략과제가 일정 비율로 업적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그룹 · 회사 · 담당업무의 재무/비재무적인 평가요소가 모두 성과지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근감사위원은 업무의 특성상 회사의 계량적 지표와 연계된 평가를 배제하고 담당업무 전략과제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 및 개인성과 측정 결과와 개인 보상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회사 재무성과, 담당그룹 KPI 와 비계량적인 전략과제 성과를 포함하여 업적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변동됩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전사 성과가 직접적으로 장기성과급 산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 성과미달시 보상을 조정하는 방법

경영진 등의 경우 재무적인 성과가 목표 미달될 경우 달성률에 따라 성과급이 0%~90%까지 조정됩니다. 또한 과거 대비 회사의 절대 수익 창출 규모가 줄어들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성과급 규모가 연동하여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3]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가]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사의 변동보상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성과급은 직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확정 후 지급하며,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장기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이연된 보상액 또는 지급된 보상액에 대한 조정정책

변동보상 중 장기성과급은 부여 이후 4년간의 평균 성과에 의해 최종 지급 수량이 결정되고, 지급시점의 주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사 장기성과급 구조상 지급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장기보상 전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자연히 보상 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 이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연보상액 중 지급확정과 미확정의 결정기준

장기성과급은 부여 당시 일정 수량의 주식이 부여되며,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주식수가 변동되며, 최종 운영기간 종료시점의 주가에 따라 최종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운영기간이 종료되어야 이연 보상 최종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4]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상액 중 고정보상액과 변동보상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경영진 등의 고정보상은 기본급과 활동수당으로 구성되며, 변동보상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보상의 각 규모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결의후 확정되며, 경영진 직위 별로 기본급의 일정 배수로 차등되어 있습니다.

[나] 변동보상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경영진 등의 변동보상 중 단기성과급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장기성과급은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변동보상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변동보상 중 단기성과급은 현금으로, 장기성과급은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변동보상 중 주식/주식연계상품의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변동성과급 중 이연 지급되는 장기성과급은 성과와 연동하여 4년간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장기성과급의 비중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1]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1)	고정보상액 2)	변동보상액 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4년)	경영진	6	16	23	17
	특정직원	-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6	16	21	13
	특정직원	-	-	-	-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이상 경영진·특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고정보상'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변동보상'으로 분류

[2] 변동보상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변동보상액				
		현금	주식 1)	주식연계상품 2)	기타 3)	
전년도 (2014년)	경영진	23	6	12	5	0
	특정직원	-	-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21	8	11	2	0
	특정직원	-	-	-	-	-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인 방법(예 :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 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3)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상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주3) 기타: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4년)	경영진	35	0	35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46	0	46
	특정직원	-	-	-

주1) 이연보상액: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주3) 2015년 발생 변동보상액을 2016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 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상액을 2015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상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4년)	경영진	35	17	12	5	0	0
	특정직원	-	-	-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46	13	16	12	5	0
	특정직원	-	-	-	-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5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2015년(t기) 발생분, 2014년(t-1기) 발생분, 2013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5] 이연보상의 성과조정 (해당년도 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축소액 1)		
		주가변동 반영 2)	성과평가 등 반영 3)	
전년도 (2014년)	경영진	0.2	0	0.2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0	0	0
	특정직원	-	-	-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중에서 추가변동, 재무성과 등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 보상을 축소하였으나, 추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상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한다.
- 주2) 이연보상이 추가와 연동된 경우 추가하락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 주3) 이연보상이 재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부분을 기재

[6]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4년)	경영진	0	0	0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0	0	0
	특정직원	-	-	-

- 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성의 보장상여는 보장성 상여금에서 제외(이하 동일)
- 주) 기존 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 이전부터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해당된 자를 기재

[7]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4년)	경영진	0	0	0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0	0	0
	특정직원	-	-	-

- 주) 신규 고용자 : 당해 회계연도중에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해당된 자를 기재

[8]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상액	1인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4년)	경영진	0	0	0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5년)	경영진	0	0	0
	특정직원	-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상액에서 제외

7.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9]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 차감전순이익(B)	비율 [A/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전년도 [2014년]	2,621	8,508	30.8%	3,329	0.79
당해년도 [2015년]	2,740	8,220	33.3%	3,151	0.87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08

리스크관리위원회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Shinhan Card



8.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의 인식, 측정, 통제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변경, 리스크 유형별 허용한도 설정/초과승인, 리스크관리규정 제·개정 및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중심으로 직·간접 지도·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3조(구성)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합니다. 2015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 종사 경험이 있는 2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리스크관리부문과 유기적인 보고/통제/협의 구조 하에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를 통한 주요사항 결의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리스크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제반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리스크관리 철학을 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원칙은 회사의 리스크 철학 및 그룹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원칙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 ① 모든 영업활동은 사전 설정된 위험성향 내에서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 ② 경영진의 관여를 제고하는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
- ③ 영업부문과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④ 비즈니스 의사결정시 리스크를 명확히 고려하게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⑤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리스크 관리 기능을 지향한다.

8. 리스크관리위원회

- ⑥ 평상시에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각을 공유한다.
- ⑦ 그룹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준수하고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규정에 의거, 회사가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진출, 신상품 또는 신서비스의 개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 등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리스크 점검을 거친 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신용, 금리, 유동성, 운영 및 기타 리스크를 평가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리스크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자기자본 대비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한도관리체계를 수립 및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위기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자본한도 입안 및 한도초과시 사후대책,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신설 및 변경, 리스크 관련 주요 규정의 제정 및 폐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지주회사와 협의토록 하여 그룹차원의 통합적인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재무/사업계획 수립시 위험수준을 감안한 최대 자산성장 가능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고, 확정된 재무/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가용자본, 위험자본총량, 완충자본을 포함한 위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신한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회사의 총리스크한도 범위 내에서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사 총리스크한도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여 리스크가 한도 내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리스크 한도 근접시 지주사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한도 유형, 한도조정 사유 등에 따라 지주사 또는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해외 사업 투자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지법인 관련 자본금 출자 및 증자, 기업 인수합병, 기타 이사회 결의 대상인 지분참여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투자 관련 전략적 Buffer를 리스크한도로 별도 설정하여 한도범위내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8. 리스크관리위원회

[라]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은 크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정의 및 역할을 규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과 리스크관리 조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리스크관리규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리스크관리규정에 의거, 구체적 리스크관리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한 리스크관리업무 규칙/ 종합위기관리규칙/ 리스크 사전사후 점검운영규칙으로 세분화되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리스크관리 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제정 및 개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그 밖에 각종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및 현황과 대손충당금적립 기준 및 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가 결의한 중요사항 및 실행결과 등을 보고 받아 주요 리스크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모니터링 합니다.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2명(과반수)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2명은 금융회사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독립성 및 전문성을 고려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중 기존 위원인 소재광 기타비상무이사의 퇴임(2015년 8월 22일)으로, 2015년 11월 12일 기타비상무이사인 임보혁 이사가 신규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15년 중 재임하였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경림	사외이사	위원장	'11. 3. 22	'15년 결산기 정기주총일
박평조	사외이사	위원	'14. 3. 31	
임보혁	기타비상무이사	위원	'15. 11. 12	'16. 2. 3
소재광	기타비상무이사	위원	'12. 3. 28	'15. 8. 22

8. 리스크관리위원회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15년에는 총 7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90%로 참석율이 높아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15. 3월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임하였고, '15. 12월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16년 총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등 정기 보고사항에 대해 분기 단위로 보고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15. 8월에 소집된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신용카드 및 소비자 금융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현지 유력 그룹사(세계 2위 살림그룹)를 제휴 파트너로 하는 파이낸스사(스와달마) 지분 인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이후 추가 증자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시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진행 예정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5년도 제1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2. 25일(09:50 ~ 10:20) /

안건 통지일 : 2015. 2. 11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경림	소재광	박평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14년 12월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 관련 규칙 일부 개정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리스크관리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5년도 제1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4년 12월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리스크관리

8. 리스크관리위원회

관련 규칙 일부 개정 결과, 위기상황분석 결과,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 사항 등 정기보고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규정」 일부 개정(案)을 승인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소재광 위원은 연체 및 대손 지표 관련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2015년도 제2차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3. 26일(17:40 ~ 17:50) /
안건 통지일 : 2015. 3. 1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경림	소재광	박평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5년도 제2차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박평조 이사가 김경림 이사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소재광 이사가 이에 동의한 후 김경림 이사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림 이사가 리스크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 2015년도 제3차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4. 10일(08:30 ~ 08:50) /
안건 통지일 : 2015. 4. 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경림	소재광	박평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① 카자흐스탄 해외법인 자본금 증자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5년도 제3차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카자흐스탄 해외법인의 초기 3년간 영업 필요자금을 증자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유가하락 등 최근 카자흐스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시 유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박평조 위원은 신한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으므로 신한은행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 카자흐스탄 시장에 대한

8. 리스크관리위원회

노하우를 공유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소재광 위원은 현지 법인의 경우 인지도가 미미하고 영업력도 취약한 만큼 타사와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라] 2015년도 제4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6. 5일(07:20 ~ 07:40) /

안건 통지일 : 2015. 5. 2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경림	소재광	박평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15년 3월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2015년도 제4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5년 3월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등 정기보고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 박평조이사 불참사유 : 일본 회사 업무

[마] 2015년도 제5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8. 21일(09:30 ~ 10:00) /

안건 통지일 : 2015. 8. 10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경림	소재광	박평조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15년 6월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인도네시아 파이낸스사 지분 인수의 건	찬성	불참	찬성	가결

2015년도 제5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5년 6월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

8. 리스크관리위원회

의회 회의 결과 등 정기보고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살림그룹 소유의 파이낸스사(스와 달마 파이낸스) 지분을 인수후 조인트벤처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율변동이 극심한 점을 감안, 지분출자액에 대한 환리스크 커버를 위해 기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소재광이사 불참사유 : 일신상의 사유

[바] 2015년도 제6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11. 12일(09:00 ~ 09:30) /

안건 통지일 : 2015. 10. 2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경림	임보혁	박평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15년 9월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 관련 규칙 일부 개정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리스크관리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5년도 제6차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5년 6월말 리스크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리스크관리 관련 규칙 일부 개정 결과, 리스크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등 정기보고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였습니다. 임보혁 위원은 인도네시아 법인의 운영리스크에 대해 글로벌사업팀 이외에 리스크관리팀에서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사] 2015년도 제7차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5. 12. 10일(15:30 ~ 16:00) /

안건 통지일 : 2015. 11. 26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경림	임보혁	박평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	---------

4. 의결안건

① 2015년 리스크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 그룹 바젤 II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소매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5년도 제7차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6년 전사 총리스크한도 및 유형별 리스크한도를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바젤 II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소매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소매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안과 관련하여 리스크관리협의회, 외부 컨설팅사 및 지주 적합성 검증과 리뷰가 완료되어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결의안건은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09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Shinhan Card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김경림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경림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경림 이사는 외환은행 및 부산은행 은행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금융기관의 경험과 증권사 사외이사, 법무법인 고문 등의 활발한 대외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금융 및 법률 관련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	국내 주요 금융기관 운영
라. 충실성	○	이사회 전회 출석

[2] 사외이사 김동환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동환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동환 이사는 은행 사외이사,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의 자문위원 경험과 금융업 관련 오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금융분야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	다년간의 금융분야 연구실적 및 다양한 자문위원 활동
라. 충실성	○	이사회 전회 출석

[3] 사외이사 박평조

[가] 소극적 자격요건

박평조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박평조 이사는 재일동포 기업가로서 성공적인 기업경영, 샷포로 신용금고 대표,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부 회장 등의 경험과 일본 카드시장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기업경영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관계 없음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다. 윤리책임성	○	성공적인 기업경영, 재일동포 사회 내 리더 역할 수행
라. 충실성	○	해외[일본] 거주 불구, 이사회 적극 참여

[4] 사외이사 성재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성재호 이사는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성재호 이사는 국제법평론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을 역임 하는 등 국제법 분야 전문가로서 신한카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요약

심사 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여전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나.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 요건	○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	법률분야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	이해상충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	다년간의 국제법분야 연구실적 및 다양한 연구/대외 활동
라. 충실성	○	이사회 전회 출석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1] 사외이사 김경림

[가] 활동내역

김경림 이사는 '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 중 11회에 참석하였고,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5. 2. 25일 이사회에서 이사회내위원회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문위원회'로서 각 위원회별로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할 것과 연체 전이율 관리 강화 등을 제언하였습니다.

4. 10일 이사회에서는 카자흐스탄 금융 환경을 감안해, 대출 심사 시 현지 직원이 고객에게 커미션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Clean 마케팅'에 대한 철저한 지침 마련과 운영을 제언하였습니다.

12. 10일 이사회에서는 신용카드 회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부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영업 부문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김경림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5년 중 총 82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 보수총액	53,000,000	
기본급	42,000,000	월기본급 350만 * 12개월
상여금		
기타 수당	5,000,000	회의수당 50만 * 10회 (익월 지급으로 12월분은 '16. 1월지급)
	6,000,000	리스크관리추 위원장 月수당 50만 * 12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3,000,000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3,000,000	부부동반 (인당 연 150만원 한도)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2] 사외이사 김동환

[가] 활동내역

김동환 이사는 '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 중 11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8회, 보상위원회 1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4. 2. 4일 이사회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수록 횡령 등의 금융사고 발생이 빈번해 질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감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Leniency(자진신고)제도와 관련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배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입 초기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금융사고 예방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Code9 마케팅 체계와 관련해서 고객별 Code 분석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2. 25일 이사회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해서 하반기 금리 변동 불확실성이 있는 바, 그에 맞춰 자금 분산 조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3. 26일 이사회에서는 해외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다양한 자금조달 채널 확보를 통해 회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4. 10일 이사회에서는 카자흐스탄 해외법인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서 신한은행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철수할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인 사업 진행 방향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11. 12일 이사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활성화 되어 중금리 대출 경쟁자들이 늘어날 경우 카드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12. 10일 이사회에서는 신한은행과의 시너지 효과가 잘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규정하는 법적 범위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김동환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5년 중 총 83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 보수총액	51,500,000	
기본금	42,000,000	월기본급 350만 * 12개월
상여금		
기타 수당	5,000,000	회의수당 50만 * 10회 (익월 지급으로 12월분은 '16. 1월지급)
	4,500,000	감사추 위원장 月수당 50만 * 9회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3] 사외이사 박평조

[가] 활동내역

박평조 이사는 '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 중 10회에 참석하였고,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중 5회, 보상위원회 1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1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1회 불참은 在日 회사 회의 참석으로 인함]

'15. 2. 4일 이사회에서 Code9 마케팅과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 사례로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향후에도 지속 발전/보완시켜 줄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4. 10일 이사회에서는 카자흐스탄 해외법인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신한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신한은행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하는 등 양사간의 시너지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8. 21일 이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성과와 발전을 위해서 당사의 수익 보다는 현지의 금융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12. 10일 이사회에서는 향후 해외 ABS발행 규모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등으로 해외 경제 상황이 신한카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해외 경제상황을 더욱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이를 경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박평조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5년 중 77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 보수총액	51,000,000	
기본급	42,000,000	월기본급 350만 * 12개월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상여금		
기타 수당	4,500,000	회의수당 150만 * 9회 [익월 지급으로 12월분은 '16. 1월지급]
	4,500,000	회의수당 50만 * 9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 국외 거주 사외이사의 경우 상기 보수 이외에 교통비와 숙박비 등 필요경비성 비과세 수당이 회의참석 1회당 1백만원 있음

[4] 사외이사 성재호

[가] 활동내역

성재호 이사는 '15년 중 개최된 이사회 9회 중 9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5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5. 3. 26일 사외이사 취임)

'15. 4. 10일 이사회에서 카자흐스탄 해외 사업과 관련 웹페이지 등만으로는 현지 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법적 리스크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성재호 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5년 중 총 58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 목	금액[원]	산출 내역
가. 보수총액	35,000,000	
기본금	31,500,000	월기본금 350만 * 9개월
상여금		
기타 수당	3,500,000	회의수당 50만 * 7회 [익월 지급으로 12월분은 '15. 1월지급]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5] 요약

사외 이사명	구분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시간 (Hour) 실적
			감사 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보상 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반장식	2	2	3	3	-	-	-	-	1	1	28
김경림	11	11	-	-	6	6	-	-	2	2	82
김동환	11	11	8	8	-	-	1	1	-	-	83
박평조	11	10	-	-	6	5	1	1	-	-	77
성재호	9	9	5	5	-	-	-	-	1	1	58

※ 반장식 이사 : '15.3.26일 퇴임, 성재호 이사 : '15.3.26일 취임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김경림	김동환	박평조	성재호
최초선임일자	'11. 3. 22	'13. 3. 27	'14. 3. 31	'15. 3. 26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신입사외이사 대상 신한카드 경영현황 보고	3/10일(2시간), 회사/사업 현황 및 주요실적 등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참석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나. 2015년 이사회 워크숍	11/12일(2시간), '16년 경제전망, 경영전략 등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교육 시간	2	2	2	4

라. 기부금등 지원내역

사외 이사	기부 받은 비영리법인 등		기부한 금융회사 등	지원 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선임 전	선임 후
김경림	-	-	-	無	無
김동환	-	-	-	無	無
박평조	-	-	-	無	無
성재호	-	-	-	無	無

마.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가] 임원의 배상책임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

임원의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주주나 제3자(종업원, 소비자, 경쟁업체 등)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함으로서 해당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

부당행위(Wrongful Act)란, 임원으로서의 의무위반, 태만, 과실, 누락, 허위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을 행하였거나 또는 행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임원으로서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함 [담보 범위는 약관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Company Reimbursement) :

상기 배상청구에 대하여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보상 함으로서 받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생한 회사의 손해를 보상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가]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나] 대주주 및 지배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라]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마]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바]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사]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자] 전문직업 수행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3] 보험기간 : 2015. 4 ~ 2016. 3

[4] 보상한도 : 그룹 총 보상한도 500억원 [청구당/그룹사별]

[5] 담보지역 : 북미지역 포함 전세계

2015. 4월 아래와 같은 특약을 삽입하여 임원책임배상 보험을 재 체결 하였습니다.

“특약 신설 : 피보험회사 중 신한카드,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 리바자산운용, 제주은행의 사외이사일 경우 자기부담액을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로 한다.”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외이사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에서 결의한 평가방법에 의거,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익명성 보장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을 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 2. 25일 개최된 제1차 정기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관련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명시된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1월에 사외이사 본인, 상호간 및 이사회/이사회내위원회 운영 부서장에 의한 평가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당사 이사회는 2015. 3. 25일 개최된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평가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사외이사 내부평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평가는 사외이사별로 전문성[이사로서의 경험과 지식 등], 직무공정성[공정한 직무수행 정도 등], 윤리책임성[윤리의식과 책임성 등], 충실성[충분한 시간과 노력의 할애 등]에 대해 5등급 절대평가로 실시 되고 있습니다.

③ 평가 절차

사외이사 평가는 우편을 통한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당사 이사회는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의 전과정을 외부업체에 위탁을 통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 2. 25일 개최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지배구조 관련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명시된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2015년도 신한카드 사외이사에 대해 이사회와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평가결과 모든 사외이사가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해당 평가는 2016. 1. 4~1. 22일 서울매니지먼트社를 통해 우편을 통한 서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본인(30%)/사외이사간(60%)/직원(10%)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원평가에는 이사회 및 이사회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내위원회 소관 부서장[전략기획 / 감사 / 리스크관리 / 인사팀장]이 참여 했습니다.

전문성/직무공정성/윤리책임성/충실성 지표로 나누어 각3개 항목 총 12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진행 되었으며, 충실성 지표 출석률은 80%이상[5등급]/60~80%[4등급]/40~60%[3등급]/20~40%[2등급]/20%미만[1등급]으로 구분 평가 되었습니다.

㉔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 평가 결과

사외이사	평가 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김경림	5	5	5	5	
김동환	5	5	5	5	
박평조	5	5	5	5	
성재호	5	5	5	5	

※ 평가 등급 : 5등급(4.5~5.0) - 매우 우수 / 4등급(3.5~4.5) - 우수 / 3등급(2.5~3.5) -보통 / 2등급(1.5~2.5) - 부진 / 1등급(0~1.5) - 매우부진

- 개선 방안 : 향후에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예정입니다.

[3] 외부평가

[가] 외부평가 개요

외부평가는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 된 이후,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해당 사항 없음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아.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 의 소집 및 주재
 -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금융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 김경림 선임사외이사 [’15. 3. 26일 이사회에서 선임, 임기 : ’15. 3. 26~’16. 3. 23]
 -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안건이 개최일 2주전에 사외이사진들에게 통보 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
 - 2016년도 경영계획[안] 수립 전, 이사회워크샵 실시를 요청하여 ’15. 11. 12일 개최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지원부서 : 전략기획팀
- 조직구성 : 부서장(총괄) 1명, 부서원 15명
- 지원내역 :
 - ① 이사회 등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② 이사회 등의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 ③ 이사회 등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 ④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 지원 및 제반 업무 등
 - ⑤ 신규 선임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 실시
 - ⑥ 사외이사 평가업무 지원
 - ⑦ 기타 이사회 등의 지시사항 처리

자.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 위	경력
김경림	2011. 3. 22	2015년 결산기 정기주총일	59개월	리스크관리위 [’11. 3월~현재] 사추위 [’14. 3월~현재]	리스크관리 위원장 [’12. 3월 ~현재]	법무법인 지평 비상임고문 [’14년~ ’15. 3월]

9.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소재광	2012. 3. 28	2014. 3. 31	24개월	리스크관리위 ('12. 3월~'15. 8월) 사추위 ('12. 3월~'14. 3월)		신한금융 지주회사 부사장 ('12년~ '15. 8월)
김동환	2013. 3. 27	2015년 결산기 정기주총일	35개월	감사위 ('13. 3월~현재) 보상위 ('15. 3월~현재)	감사위원장 ('15. 3월 ~현재)	한국금융 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박평조	2014. 3. 31	2015년 결산기 정기주총일	23개월	리스크관리위 ('14. 3월~현재) 보상위 ('15. 3월~현재)	보상위원장 ('15. 3월 ~현재)	일본 미마츠기업 사장
성재호	2015. 3. 26	2015년 결산기 정기주총일	11개월	감사위 ('15. 3월~현재), 사추위 ('15. 3월~현재)		성균관대 교수

※ 소재광 이사의 경우 '12. 3. 28~'14. 3. 31 사외이사, '14. 3. 31~'15. 8. 22 기타비상무이사로 활동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Shinhan Card



10. 주주총회

가. 주주현황

- 신한카드는 신한금융주식회사 소유자본 100%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 2015년 12월 31일 기준 발행 주식 총수는 125,369,403주(보통주)입니다.
- 2015년도 中 주주현황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개최 년도	구분	소집 결의일	소집 공고일	개최일자 [요일]	개최장소	소요시간 [분]	이사회구성원 참석여부
2012	제26기 정기주총	'12. 2. 24	'12. 2. 24	'12. 3. 28 [수]	신한카드 본사	10	○
2013	제27기 정기주총	'13. 2. 22	'13. 2. 22	'13. 3. 27 [수]	신한카드 본사	10	○
2013	제28기 임시주총	'13. 8. 23	-	'13. 8. 23 [금]	신한카드 본사	15	○
2014	제28기 정기주총	'14. 2. 26	'14. 2. 26	'14. 3. 31 [월]	신한카드 본사	10	○
2014	제29기 임시주총	'14. 8. 22	-	'14. 8. 22 [금]	신한카드 본사	15	○
2015	제29기 정기주총	'15. 2. 25	'15. 2. 25	'15. 3. 26 [목]	신한카드 본사	20	○
2015	제30기 임시주총	'15. 8. 21	-	'15. 8. 21 [금]	신한카드 본사	15	○

구분	안건명	비고
제26기 정기주총	제1호 의안 : 제26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27기 정기주총	제1호 의안 :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28기 임시주총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대표이사 사장 선임의 건	이사 위성호를 대표이사 사장으로선임
제28기 정기주총	제1호 의안 : 제28기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29기 임시주총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자동차대여업무'를 정관 사업목적에 반영
제29기 정기주총	제1호 의안 : 제29기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정관 상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용 반영
제30기 임시주총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대표이사 사장 선임의 건	임보혁이사 신규선임 및 대표이사 위성호 중임 [임기 1년 연장]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Shinhan Card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해당 사항 없음



2015 Annual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Shinhan Card



12. 첨부

[붙임 1] 신한카드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Shinhan Card Co., Ltd.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3.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
4.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5.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6.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7. 할부금융업무
8. 시설대여업무
9. 연불판매업무
10.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11. 어음할인업무
12.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업무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경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14. 지급보증업무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16. 기타 신용의 공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17. 신기술사업금융업무
18. 벤처사업 관련 지분출자 및 투자업무
19. 인터넷 및 기타 e-Business 관련사업(Hub - Portal Site 운영, 쇼핑몰 운영 등 포함) 및 투자업무
20. 전자상거래 관련사업 및 투자업무
21. 통신판매업무
22. 보험대리점업무
23. 일반여행업
24. 환전업무
25. 카드의 제작대행업무
26. 부가통신업무
27. 광고업
28. 도, 소매업

12. 첨부

29. 부동산임대업
30. 자동차 대여 업무
31. 전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 대여 및 판매업무
32. 전 각 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33. 기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 등록하였거나 인·허가, 승인 등을 득한 업무
34. 기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제3조 [본점 및 지점]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 영업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car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십억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오천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 우선주식은 의결권없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주주총회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우선주식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⑥ 본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12. 첨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2 [상환주식]

- ① 회사는 발행시의 주주총회 결의로 우선주식을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이하 “상환 주식”이라 함)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수는 6억주 이내로 하고, 그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회사가 발행된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를 상환하고, 이 때 계산상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한 적절한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중에서 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④ 본조의 상환주식은 상환기간 중 주주가 청구하는 때에 회사가 상환하거나 또는 회사가 상환기간 중 상환 결정을 한 때에 상환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상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⑤ 본 회사는 본조의 상환주식을 제 9조의 3에 의한 전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9조의 3 [전환주식]

- ① 회사는 6억주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는 전환되는 우선주식의 총수와 동수로 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주식이 발행된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은 일할배당에 의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제 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신주의 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각자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갖는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비율로 신주의 인수권을 가질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2호에 의한 신주배정은 2억주, 제3호에 의한 신주배정은 5억주,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신주배정은 12억주, 제6호에 의한 신주 배정은 2억주를 각 각 초과하지 못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2.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4. 자금의 조달 또는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
- ③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납입기일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배정할 수 있으며,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1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12. 첨부

본 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명의개서등]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 익일로부터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본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본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3.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등에게 발행하는 경우
 4.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5.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후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6.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주총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12. 첨부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의 이자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하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 3.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등에게 발행하는 경우
 - 4. 전략적 제휴,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 5.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발행하는 경우
 - 6.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 또는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그 발행가액은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하고,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본점 소재지 또는 그 인근지역에서 개최한다.

제18조 [의장]

12. 첨부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권]

본 회사의 주주는 주식 1주에 대하여 1주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등

제25조 [이사의 선임]

- ① 본 회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그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본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하되, 수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각자 본 회사를 대표한다.
- ④ 본 회사는 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 2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7조 [이사의 보선]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사의 결원이 생겨도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

12. 첨부

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28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법률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본 회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 아닌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31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 정관에 의거, 기구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32조 [이사회내 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상위원회
- ② 각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내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사회내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에서 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며 제34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이사회내 의장]

- ① 이사회내의 의장은 매년 이사회내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내의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내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내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이사회내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이사회내 소집]

- ① 이사회내의 이사회내 의장이 소집한다.

12. 첨부

-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및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은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37조 [감사위원회]

- ① 본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단,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 [준법감시인]

본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6의 제④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한다.

제6장 계산

제39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무상태표
 - 2. 손익계산서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

12. 첨부

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분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2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본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3조 [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 ③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3조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전항의 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적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2조 [사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경영상 필요한 사규를 정할 수 있다.

12. 첨부

제3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 제3항은 이 정관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즉시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4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첨부

[붙임 2] 신한카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조 [목적]

이 규범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회사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법상 회사”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상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을 말한다.
3. “사외이사”란 「상법」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4.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5. “이사회등”이란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6.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특정업무 종사자”란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의 설계·판매·딜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투자금융(IB), 트레이딩(주식·채권·파생상품거래 등) 담당 부서장 및 별도의 고용계약에 따라 담당업무 경상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받는 전문(계약) 직원 등 금융회사의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을 의미한다.
8.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9. “변동보상”이란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외에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
10.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란 회사가 제54조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1. “준법감시인”이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하거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제1절 이사회

제3조 [이사의 구성]

- ①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이나 지식 및 신한금융그룹의 창업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신한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 ②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제4조 [이사의 권한 및 책임]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첨부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6.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사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제6조 [이사회내위원회]

회사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상위원회

제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이하 이 조에서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12. 첨부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제3호의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9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리스크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보상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보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위험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2. 보상체계의 재무상황·위험과의 연계성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보상체계에 대한 연 단위의 독립적인 평가(이하 “연차보상평가”라 한다) 실시
3.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와 경영진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4. 그 밖에 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

④ 보상위원회는 보상제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심의 및 연차보상평가 실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사외이사는 보상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이사회내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제1절 사외이사

제12조 [사외이사의 선임]

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사외이

12. 첨부

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14조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제15조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6조 [사외이사의 임기]

- ①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함에 따라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제21조에 의한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

12. 첨부

어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 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종료일로부터 2회째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선임 되더라도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제3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등의 사외이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퇴임 후 2년 이내에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7조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 ① 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를 말한다)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1항 전단은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9조 [사외이사의 자료요청권 등]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사외이사의 책임]

-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한다.
- ② 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에의 참여에 할애한다.
- ③ 사외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⑤ 회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임시의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최대 한도 1억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한다.
- ⑦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자회사 등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

12. 첨부

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

제21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을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할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하되, 회사와 최근 3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 ⑤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한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 [사외이사의 보수]

-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한다.
- ② 사외이사의 보수를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운영]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2.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업무지원
 3.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제2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와 자회사등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한다.
- ② 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

12. 첨부

송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제25조 [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응역의 제공]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제26조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

제27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도덕성, 신한가치 구현 능력,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 경영자로 선임한다.

제28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 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절차 개요
2.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최고경영자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9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회사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경영진(등기 임원 제외)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 한다.

제4장 감사위원회

제30조 [기본원칙]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제31조 [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12. 첨부

-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한다.

제32조 [감사보조조직]

-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 ②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 [상근감사위원 등]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4.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제34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

- ①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한다.

제35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 ①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에 관한 사항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장 보상위원회 및 성과보상체계

제36조 [기본원칙]

- ① 보상위원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보상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②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높은 보상을 위해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과도한 변동보상 지급으로 회사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③ 회사는 건전한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임직원의 보상제도를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12. 첨부

제37조 [보상위원회 활동의 서류 보존]

회사는 보상위원회의 설치·운영 내역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부서의 관리·감시활동내역을 서류로 보존한다.

제38조 [보상과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 ①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담당자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상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9조 [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 ①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을 변동보상으로 하고,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한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의 변동보상 규모가 조정 될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설계한다.

제40조 [이연지급]

- ①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은 수년간 이연 지급하며, 특히 최고 경영진과 고액연봉 특정업무 종사자의 경우 이연지급하는 변동보상의 비율을 상당수준 이상으로 한다.
- ② 이연지급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연지급 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 [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 ① 회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의 변동보상 중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부여시점 이후 최소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 [현금보상 지급 등]

- ① 이연지급된 보상 중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다.
- ② 지급확정기간 중 회사는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을 재무성과나 손실규모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43조 [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상의 제한]

- ① 회사는 보장형 상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 ② 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리스크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44조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 임직원들은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리스크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제45조 [성과평가 지표]

12. 첨부

- ① 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한다.
 1.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반영
 2.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비경상적인 요인들은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지표를 반영
 3.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반영
 4. 회사의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상 제도를 활용
 5.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영

제6장 공시

제46조 [정기공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 회사 내부기관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등 회사 내부기관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시 선임에 대한 이유
 3. 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사외이사후보 추천 개요
 -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사외이사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
 - 라. 사외이사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 마. 사외이사 후보와 회사 및 자회사등(그 임원 및 대주주 포함)과의 관계
 - 바. 관련법령 및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 아.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자.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
 - 차.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카.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과 관련 하여 보고한 내용

12. 첨부

- 파.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제13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제20조 제7항의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등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바. 사외이사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의 제공 현황
 - 카. 회사와 사외이사등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나. 회사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6.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7.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 가. 보상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상체계 의사결정 절차
 - 나.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 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 다. 다음 세항의 보상에 관한 총계 정보와 회사의 위험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및 특정업무종사자 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
 - (1) 회계연도 중 보상액(고정 및 변동 보상액 구분, 수급자 수)
 - (2) 변동보상 금액 및 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
 - (3) 이연된 보상액(지급확정 및 지급불확정 구분)
 - (4) 이연된 보상액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성과조정에 따른 지급액 및 축소액)
 - (5) 회계연도 중 신규 고용자에게 지급한 보장성 상여금액, 해당자수 및 1인기준 최고 지급액
 - (6)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관련 보상금액, 해당자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7)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액
8.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12. 첨부

9.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 수
 - 나.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10.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11.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변동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상은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 한다.

제47조 [수시공시]

-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제11조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경우 회의일시, 보고안건을 포함한 안건내용, 사외이사의 참석 및 찬성 여부 등을 익월 15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익월에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향후 공시 날짜, 지연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시계획을 공시한다.

제48조 [주주총회]

-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49조 [공시방법]

이 규준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규범은 2015. 2.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등]

- ①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범 시행 후 선임(재선임과 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규범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16조 제3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16조 제4항을 적용한다.
- ③ 회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제17조에 따른 신입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와 준수계획을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시한다.
- ④ 이 규범 시행일 현재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자도 제20조 제7항 제1호와 관련해서는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

12. 첨부

[붙임 3] 신한카드 이사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경영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영진'이라 함은, (i) 대표이사 사장 및 (ii) 이사가 아닌 자 중 이사회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한 자로서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사 아닌 경영진”이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제4조 [이사회 역할 및 권한]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회사 경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이 규정 제13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④ 이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⑤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5조 [이사의 의무 및 책임]

- ① 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보호 및 회사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구성]

이사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7조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8조 [종류]

12. 첨부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성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의 결원,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이사회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의 진행]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제13조 제1항 제5호 '사'목의 결의사항과 감사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위임 및 결의사항 등]

- ① 이사회 결의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관계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내의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2. 정관 및 중요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가. 정관
 -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보상위원회규정
 - 다. 경영진운영규정, 경영진평가 및 보수규정, 경영진퇴직위로금 규정, PU(Performance Unit)운영규정
 - 라. 내부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 마.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3.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이사, 경영진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첨부

- 다. 조직·인사·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라.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과 관련된 사항
 - 마. 자회사 등의 설립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바.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 사.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등에 관한 사항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나. 이사와 본 회사간의 거래승인 및 이사의 경업승인에 관한 사항
 - 다.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이사의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라. 준법감시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마. 대표이사 사장의 이사 아닌 경영진 임면요청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바.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 사.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사외이사 평가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가. 1건당 200억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동·부동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 나. 1건당 100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단 기존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직전 계약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함)
 - 다. 1건당 자기자본(직전 회계연도 말 또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 중 최근의 자기자본 기준, 이하 같음)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을 신규 출자하는 경우
 - 라. 기타 1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재산의 차입, 용역계약 이외의 계약, 소송에 관한 사항(단, CP, Call 차입 등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차입은 제외)
 - 마.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의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 바. 사채 모집에 관한 사항
 - 사.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 (1) 이사 또는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 주주
 - (2) 제1단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3) 제1단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4) 제1단부터 제3단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 (5) 제1단부터 제3단까지의 자가 제4단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6.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가.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변경
 - 나. 리스크관리위원회 부의대상 안건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타
- 가. 관계법령·감독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 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2. 첨부

- 다.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사항
 - 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 마. 이사회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 하는 사항
 - 바. 기타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분기별 경영실적 현황
 2. 분기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지참 준수 현황
 3.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4.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기타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 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5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 ①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소집권자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인사, 기타 비밀 유지가 중요한 사항의 경우
- ②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 회계, 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7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상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12. 첨부

제19조 [보수 등]

이사회 이사 중 경영진이 아닌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수당 포함)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 자료수집비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국]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의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첨부

[붙임 4] 신한카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금융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12. 첨부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의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사외이사 선임 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등]

- ①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 ③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 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검증된 자중에서 인선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하여 추천한다.
- 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를 첨부한다.
- ⑦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회사 및 자회사등,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0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12. 첨부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7.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장 보 칙

제14조 [간사]

-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 [규정의 개폐]

- ① 이 규정의 개정, 변경 등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첨부

[붙임 5] 신한카드 감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사항,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 [권한]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4.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 [의무]

- ① 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독립의 원칙]

12. 첨부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7조 [선임 및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자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 시점까지로 한다.

제8조 [해임 및 총원]

- ①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 ② 위원회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사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권한위임]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상근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감사위원의 미착,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근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③ 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④ 일상감사사항 등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위원에 위임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위원회에서 보고한다.
- ⑤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제 3 장 회 의

12. 첨부

제11조 [회의의 종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부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심의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① 결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마.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감사계획의 수립
 -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 다.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라. 외부감사인인 선임 및 해임 승인
 - 마.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4. 기타
 -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사항

12. 첨부

1.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 라.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 마.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 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 사.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 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 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조사 및 검토
- 차.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조사 및 검토
- 카.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2. 기타

-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경영정보 요구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17조 [감사업무의 위임]

-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 3.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12. 첨부

제18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

-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년도 마다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 ①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칙

제20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 달성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부서]

- ① 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 ②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 ③ 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및 제9조는 회사의 상장폐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첨부

[붙임 6] 신한카드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및 역할]

위원회는 회사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의 인식, 측정, 통제 등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 [소집]

- ① 정기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리스크 유형별 허용한도의 설정 및 허용한도 초과 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현지법인 관련 자본금 출자 및 증자, 기업 인수합병, 기타 이사회 결의 대상인 지분참여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련 사항
 6. 그룹의 위험가중자산, BIS비율 산출을 위해 금융감독원 승인이 필요한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각종 리스크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
 2.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및 현황과 대손충당금적립 기준 및 현황
 3. 리스크관리협의회가 결의한 중요사항 및 실행결과
 4.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지시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선이행 및 추인]

제5조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 사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선이행(先履行)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에 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12. 첨부

제7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업무사항 및 성과를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첨부

[붙임 7] 신한카드 보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경영진 등의 평가보상체계가 건전하게 수립, 운용되도록 관리한다.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2인 이상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 중 1인 이상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상의 회사(지배구조내부규범 제2조의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해서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소집]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결의사항 등]

-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지주회사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의 확정
 2. 지주회사 보상위원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특정업무 종사자(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의 특정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결정에 관한 사항
 4.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안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연차보상평가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첨부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관계인의 출석, 관계자료 제출 및 외부자문]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9조 [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첨부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후보 검토보고서

성명	종합의견
김동환	적합
박평조	적합
성재호	적합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2. 첨부

후보자	김 동 환	소속법인	한국금융연구원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제1항, 제2항 -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4항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주요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로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 금융, 경제 전문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전문성(5등급), 직무공정성(5), 윤리책임성(5), 충실성(5)
------------------	--------------------------------------

※ 평가 등급 : 5등급(4.5~5.0) - 매우 우수 / 4등급(3.5~4.5) - 우수 / 3등급(2.5~3.5) - 보통 / 2등급(1.5~2.5) - 부진 / 1등급(0~1.5) - 매우부진

12. 첨부

후보자	박 평 조	소속법인	미마츠 기업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제1항, 제2항 -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4항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주요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로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 경영 전문가 [미마츠기업(일본) 사장]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전문성(5등급), 직무공정성(5), 윤리책임성(5), 충실성(5)

※ 평가 등급 : 5등급(4.5~5.0) - 매우 우수 / 4등급(3.5~4.5) - 우수 / 3등급(2.5~3.5) - 보통 / 2등급(1.5~2.5) - 부진 / 1등급(0~1.5) - 매우부진

12. 첨부

후보자	성 재 호	소속법인	성균관대학교
-----	-------	------	--------

※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상법 제382조 제3항 - 주식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제1항, 제2항 -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4항 -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 -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 자격요건 주요항목

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해당여부	비 고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극적 자격요건 [주요사항]	해당여부	비 고
소속 법인 자본의 10% 초과여신거래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소속 법인 및 본인 자문거래 및 용역거래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2개 이상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다른 회사(자회사등 제외)의 사외이사로 겸직 여부	미해당	특이사항 없음

적극적 자격 요건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 법률 전문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충족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평가결과	전문성(5등급), 직무공정성(5), 윤리책임성(5), 충실성(5)
------------------	--------------------------------------

※ 평가 등급 : 5등급(4.5~5.0) - 매우 우수 / 4등급(3.5~4.5) - 우수 / 3등급(2.5~3.5) - 보통 / 2등급(1.5~2.5) - 부진 / 1등급(0~1.5) - 매우부진

BIG to GREAT  신한카드